

④ 준비물 : 특별한 것 없음

(4) 진 행

- ① 이야기의 첫줄거리와 마지막을 동시에 동아리마다 나눠준다.
- ② 그 중간 내용을 동아리 성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차례로 메워 나간다.
- ③ 구성원들을 일렬로 세우고 차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마지막 이야기 줄거리가 시간 내에 완성되어야 이긴다.
- ④ 발표 후 각 동아리의 이야기를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제한 시간 내에 완료했는가? 상황에 진실성이 있는가? 골고루 발언했는가? 등이다.

(5) 유의 사항

- 사이사이 진행자가 시간을 가르쳐주어 긴장된 분위기를 만든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토론의 원칙과 방식을 배울 수 있다.
- ② 모든 사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교환을 인식한다.

11. 모의 청문회

(1) 개 관

- 1989년, 우리는 TV를 통해 5공 비리 청문회를 보면서 권력충돌의 엄청난 부정부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조차 이를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문회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우리를 소위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대중에게 폭로하는데 의미가 있다.

(2) 덕 목

-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 사회성, 비판의식 고취, 논리력 신장

(3) 준비 사항

- ① 집단 : 소집단, 중집단
- ② 소요시간 : 2시간 이상
- ③ 장소 : 넓은 실내

④ 준비물 : 모조전지, 마분지, 시험지, 연필, 매직, 크레파스, 고무줄

(4) 진 행

① 얼굴 그리기

- - 동아리별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토론해 본다.
- - 이야기가 끝나면 진행자는 각 동아리마다 인원만큼의 시험지를 나누어주고, 얼굴 그리기를 한다.

○ - 그리기가 끝나면 각자 자기가 그린 얼굴에 대해 설명한다.

② 탈 만들기

- - 얼굴을 그린 것을 발표한 후, 진행자는 두꺼운 마분지를 모두에게 나누어준다.
- - 자기가 그린 얼굴을 마분지에 옮겨 그린다.
- - 얼굴에 색을 칠한 후, 가위로 오려서 탈을 만들어 본다.
- - 탈을 쓰고 탈의 신분에 맞게 대사와 몸짓을 흉내내어 본다.

③ 청문회 개최

- - 각 동아리별로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은다. (노동자, 학생, 사장 등)
- - 따로 둥그렇게 앉아서 질문할 내용과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여 작전을 짠다.
- - 마주본 상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5) 유의 사항

- ① 얼굴을 그릴 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비슷한 숫자가 되도록 한다. 각자 그린 얼굴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직업, 현재의 상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 ② 탈을 만들 때에는 모두가 그린 얼굴을 탈로 만들어도 좋으나 동아리에서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싫은 사람을 뽑아 탈을 만들어도 좋다. 흉내낼 때, 서로 대립되는 관계(선생님과 학생, 사장과 노동자 등)끼리 짹을 지어 말싸움놀이를 하면 훨씬 놀이가 잘 진행된다.
- ③ 청문회에서 모아진 이야기를 가지고 지배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폭로하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비나리를 동아리원 모두가 집단연설식으로 발표한다. 집단연설을 할 때는 노래, 구호, 춤 등을 함께 넣어 사용하면 더욱 좋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질문을 짜고 대답을 연구함으로써 비판력과 논리력을 기를 수 있다.
- ②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의 입장에 직접 서봄으로써 그들의 실체에 접근이 용이해 진다.

12. 신문으로 전단·대자보 만들기

(1) 개관

-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신문기자들은 우리의 입장에 맞게 작성된 것이 극히 드물다.
이 놀이는 우리의 입장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문기사를 우리의 입장에 맞게 바꾸어 전단이나 대자보로 만들어봄으로써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고, 우리의 논리를 갖자는데 의미가 있다.

(2) 덕목

- 주체성, 창의성, 비판 및 판단력 신장, 사회성

(3) 준비 사항

- ① 집단 : 소집단, 중집단
- ② 소요시간 : 2시간 30분 이상
- ③ 장소 : 넓은 실내
- ④ 준비물 : 신문기사, 모조전지, 매직, 크레파스

(4) 진행

① 이야기 전달하기

- - 진행자가 동아리별로 문장이 쓰여진 쪽지를 처음 사람에게 보여준다.

- - 문장을 본 사람은 옆 사람에게 컷속말로 전달한다.

- - 전달이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면 마지막 사람이 발표한다.

② 신문기사 제대로 전달하기

- - 이번에는 신문기사 내용을 뽑아 마지막 사람에게 보여주고, 거꾸로 컷속말로 전달하게 한다.

- - 처음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가면 발표를 한다.

- - 발표 후 평가를 한다. 평가는 첫째,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둘째, 전달하는 과정에서 첨가되거나 빠진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처음 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를 내용으로 평가한다.

③ 신문기사 제대로 작성하기

- - 컷속말로 전달한 신문기사 내용을 진행자가 읽어주고, 이 기사의 앞·뒤 이야기는 어떻겠는지 각 동아리별로 알아맞춰본다.

- - 동아리에서는 토론을 하여 우리들의 입장에 맞게 앞·뒤의 내용을 작성하여 각 동아리별로 발표한다.

④ 전단·대자보 만들기

- - 신문기사를 바꾼 것과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별로 토론하여 전단이나 대자보를 만들어 전시한다.

(5)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신문기사 전달하기를 통해서 의사전달 능력과 이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집중함으로써 주의력을 모으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② 신문기사 제대로 작성하기를 통해서 상황 판단력과 비판력 및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③ 전단이나 대자보 만들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13. 진짜 내 모습 그리기

(1) 개관

-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고 서로 친밀감, 유대감을 갖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2) 덕 목

- 자기발견 및 이해, 자기표현, 주체성, 타인이해

(3) 준비 사항

- ① 집단 : 소집단, 중집단
- ② 소요시간 : 2시간 내외
- ③ 장소 : 넓은 실내
- ④ 준비물 : 도화지, 필기구

(4) 진행

- ① 도화지를 3등분해서 양쪽을 접는다.

- ② 가운데에는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모습을 그린다.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인 모습을 그릴 수도 있다.)

- ③ 종이 왼쪽의 맨 위에는 자신의 신체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위를 쓴다.

- ④ 왼쪽의 아래에는 자기의 목표, 꿈, 바람 등을 쓴다.

- ⑤ 오른쪽 위에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장점) 3가지와 오른쪽 아래에는 자신이 잘 못하는 것(단점) 3가지를 쓴다.

- ⑥ 다 작성하였으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한다.
- ⑦ 발표가 끝나면 서로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5) 유의 사항

- 놀이 후에 진행자가 꼭 의미를 설명해 준다.
- - 몸의 각부분 -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임을 생각하게 한다.
- - 꿈, 목표, 바람 -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얼마나 현실에 근거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 검토해 본다.(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의식 확인)
- - 장점과 단점 - 자신의 능력을 올바로 평가하는 속에서 자만심 또는 열등감을 극복해 낼 수 있으며 발전적인 자신의 모습, 삶을 계획해 볼 수 있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총체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② 끝난 후 서로 느낀 점을 나누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식한다.
- ③ 스스로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확인한다.

(7) 응용

- 이 놀이가 끝난 후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종이배를 접는다. 종이배를 접었으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오른쪽으로 배를 항진한다. 노래가 끝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를 펼친 후 자기배가 아닌 것이면, 보살놀이로 넘어가도 좋다. 만약에 자기이 것이 아니면 다시 배를 항진한다. 여기서 보살놀이란 놀이의 형식을 빌어 모임 내의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놀이다.

14. 서열놀이

(1) 개관

- 이 프로그램은 계급적·계층적 사회구조와 이에 대응하는 전술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2) 덕목

- 사회성, 자기표현력 향상, 책임감, 주체성, 협동심

(3) 준비 사항

- ① 집단 : 중집단, 대집단

- ② 소요시간 : 1시간 이상
- ③ 장소 : 실내
- ④ 준비물 : 특별한 것 없음

(4) 진행

- ① 10명 이내로 동아리를 편성하고 각 동아리를 일렬로 세운다.
- ② 일렬로 선 사람들에게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제일 높은 직책으로 하여 뒤로 갈수록 차등을 두어 직책을 배정하는데, 주로 앞쪽은 상급자나 관리자의 직책을, 뒤쪽은 하급자나 노동자의 직책을 갖게 한다.
- ③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각 동아리에게 주고, 각 동아리는 주어진 직책에 맞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내용을 전달해간다.
- ④ 이번에는 바꿔서 아래로부터 위로 자기 주장을 해 나간다.
- ⑤ 아래로부터 주장을 하다 심한 탄압에 부딪히면 하급자끼리 서로 연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하도록 한다.
- ⑥ 상급자가 하급자의 연대에 맞서 마찬가지로 연대를 하면 패싸움 놀이로 넘어간다.
- ⑦ 놀이가 끝나면 각자의 느낌을 발표한다.

(5) 유의 사항

-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함께 연대를 하기 전에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한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각자 서열에 맞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계급적·계층적 구조를 인식할 수 있다.
- ②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책임감과 주체성을 익힐 수 있다.
- ③ 자신의 타당한 주장을 일관하기 위하여 연대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다.

15. 더불어 사는 세상

(1) 개관

-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자 여러 장애를 안고 있는 역할을 나누어 함께 목적지에 무사히 낙오자 없이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으로써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의미를 깨우치게 한다.

(2) 덕 목

- 협동심, 사회성, 자기인식, 책임감,

(3) 준비 사항

- ① 집단 : 소집단, 중집단
- ② 소요시간 : 1시간 이상
- ③ 장소 : 넓은 실내 혹은 실외
- ④ 준비물 : 편지봉투, 편지지, 필기구, 수건

(4) 진 행

- ① 모인 사람 수에 맞게 역할을 정한다.(이 역할을 1-2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한 군데 이상이 불구하고어야 한다.)
- ② 각 역할을 구체적으로 편지지에 적어 편지봉투에 넣는다.
- ③ 목적지와 규칙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한 후, 각각 편지봉투를 고르게 한다.
- ④ 자기가 고른 편지봉투를 뜯어서 그 안에 적혀있는 역할을 읽게 한다.
- ⑤ 내용을 읽고 난 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
- ⑥ 그런 상황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토론을 먼저 하게 된다.
- ⑦ 토론이 끝나면 목적지를 향해 이동한다. 반드시 자기의 역할대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공동체 모두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 ⑧ 목적지에 모두 도착하면 둘러앉아 서로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한다.

(5)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역할나누기를 통해서 사회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 ②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익힌다.
- ③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토론을 통해서 공동체의식과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다.

16. 종합 몸다리기

(1) 개 관

- 종합 몸다리기는 줄다리기에서 연유한 보통 몸다리기와는 달리 여러 동아리가 한꺼번에 하는 것
이므로 자연스럽게 연합할 수 있는 놀이이다. 이 놀이를 통해서 단결력을 기를 수 있다.

(2) 덕 목

- 공동체의식, 단결의식, 협동심, 자율성

(3) 준비 사항

- ① 집단 : 중집단, 대집단
- ② 소요시간 : 1시간 30분 내외
- ③ 장소 : 넓은 실외
- ④ 준비물 : 특별한 것 없음

(4) 진 행

- ① 참가한 사람들을 목적 의식적으로 나누어 이후 조직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② 몸다리기의 방법과 같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선다. (각 조는 방향을 달리함 - ex. 3조의 경우는 3각형 방향, 4조의 경우는 십자방향)
- ③ 각 동아리가 마주보는 중앙에 원을 그리고 원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동아리가 지게 된다.
- ④ 이때, 맨 뒷사람은 자기 동아리에 대하여 선전과 선동을 하고, 나머지 원들은 동아리 구호와 노래를 부른다.
- ⑤ 놀이 시작 전에 작전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5) 유의 사항

- 놀이 시작하기 전에 선동조로 뽑힌 사람이 나와 먼저 선동을 하게 한다. 이후 사람들에게 동아리를 바꾸게 할 수도 있다. 2동아리가 연합한 후 다시 경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놀이 이후 평가시간에 진행자가 연합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 놀이가 끝난 후에는 서로 평가한다.(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냈는가, 작전은 어떻게 세웠는가, 어느 편과 연대하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동아리를 바꿀 기회를 가짐으로써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자율성과 민주성을 배울 수 있다.
- ② 다른 동아리와 연합함으로써 타협하는 적절하게 타협하는 정신을 익힌다.
- ③ 자신의 동아리가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7) 응 용

- 종합 몸다리기와 형태는 다소 다르지만, 조직사수하기라는 놀이를 할 수도 있다. 조직 사수하기는 전체를 2패로 나눈 후 한패는 공격조가 되고, 다른 한패는 수비조가 되어 안을 보고 팔짱을 끈다.

노래에 맞추어 단결력을 다진 후에 싸움이 시작되는데, 공격조는 달려들어 수비조를 한 명씩 떼어낸다. 진행자는 시작에서부터 완전히 다 떼어낼 때까지의 시간을 잰다. 같은 방법으로 수비와 공격을 바꾸어서 실시한다. 완전히 격파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짧은 동아리가 승리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 역시 공동체의식과 협동심 등을 기를 수 있다.

17. 대형그림 공동창작 (걸개그림)

(1) 개관

- 대형그림을 공동으로 창작해봄으로써 우리 모두의 염원이 집약되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형식으로 공동의 목적, 바램을 확인하고 고양시켜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빠른 시간 내에 그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걸개그림은 주로 집회장소나 각종 행사장에 많이 사용되는데, 행사를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덕목

- 협동심, 책임감, 창의성, 민주정신

(3) 준비 사항

- ① 집단 : 소집단, 중집단
- ② 소요시간 : 3시간 내외
- ③ 장소 : 넓은 실내 혹은 실외
- ④ 준비물 : 광목천이나 캔버스천(광목천일 경우 젯소를 발라준다), 아크릴물감, 채색붓, 채색접시, 4B 연필, 종이

(4) 진행

- ① 주제를 정하고 내용에 대한 토의를 화면구성과 함께 한다. (이때 전체 진행자를 정하고 충분한 의견교환 속에서 공통 의견으로 주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 ② 화면구성은 현실, 과거, 미래가 고루 담아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③ 내용이 결정되면 크기를 정한다.
- ④ 작은 종이에 초안을 작성한 후 초안 크기의 축소판으로 그림을 완성한다.
- ⑤ 축소판 그림의 면을 나눈다.
- ⑥ 광목천이나 캔버스 천을 축소판의 면을 나눈 것과 같은 비례로 나눈다.
- ⑦ 축소판 그림을 보고 역할 분담하여 밑그림을 그린다.

- ⑧ 그려진 밑그림에 색칠을 한다.
- ⑨ 색을 칠한 뒤에 검은색으로 먹선을 칠한다.
- ⑩ 완성된 후에는 다함께 평가하고 기록을 남긴다.
- ⑪ 걸개그림을 걸 때는 천에 징을 박고 끈을 연결해 건다.

(5) 유의사항

- 그림의 감상은 움직이는 군중들이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구성은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유의시킨다. 아크릴 물감은 금방 굳어지므로, 쓸 만큼의 양만 덜어서 쓰게 하고, 색칠을 하고 난 붓은 물에 담가둔다. 하얀 색소가 빌라진 반들반들한 명이 캔버스천의 앞면이라는 것을 주의시킨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주제를 정하고 내용에 대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배울 수 있다.
- ② 주제를 참가자들이 토론을 통해 직접 설정함으로써 창의성을 기른다.
- ③ 각자 맡은 면의 그림을 완성해냄으로써 책임감을 기른다.
- ④ 공동그림을 그림으로써 협동심을 기른다.

(7) 응용

- 같은 맥락의 집단창작 프로그램으로써 공동 판화 만들기 혹은 연작 그림·판화 만들기를 할 수도 있다.

18. 증권시장 놀이

(1) 개관

- 삶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증권시장 놀이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 놀이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2) 덕목

- 사회성, 적극성, 주체성, 자율성, 선의의 경쟁의식 함양

(3) 준비 사항

- ① 집단 : 소집단, 중집단
- ② 소요시간 : 1시간 30분 내외
- ③ 장소 : 실내
- ④ 준비물 : 1명당 3장씩 줄 수 있는 똑같은 크기의 돈표(만원권 1장, 천원권 2장)

(4) 진 행

- ① 참가자 모두에게 각자 돈표 3장씩을 나누어준다. (이때, 돈표 3장을 현금 12,000원과 직접 맞바꿀 수 있다고 현실감을 줌으로써 이기심 또는 경쟁심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작'하는 사회자의 신호와 함께 제한된 시간(약 5분 정도)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그만'이라는 사회자의 선언에 따라 일제히 행동을 멈춘다.
- ③ '시작'하면 참가자 모두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 아무한테나 '증권삽니다'라고 먼저 소리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돈표 3장 중 1장을 먼저 소리친 사람에게 내밀어서 뽑도록 한다. (돈표의 액수가 기재된 면을 보일 필요가 없다.)
- ④ 먼저 소리친 사람은 상대방의 돈표를 1장 뽑은 뒤, 자기 것과 비교하여 보고 다시 상대방에게 4장 중 아무거나 1장을 되돌려 준다. (한사람 당 돈표는 항상 3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상대를 바꿔가면서 진행자가 '그만'할 때까지 진행한다.
- ⑥ 이때 규칙은 모두 한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바꾸자고 하면 언제든지 교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⑦ 진행자는 최고 액수를(3만원) 지닌 사람에게 상품이 걸려 있음을 미리 알려준다. 그러나 실제로 상품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5) 유의 사항

- 놀이를 진행하는 동안 만 원짜리 3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면 교환을 하지 않고 도망 다니거나 교환하자는 사람과 안 바꾸겠다고 싸우기도 한다. 이렇듯 규칙을 어겨가며 많은 액수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임에서 이런 이기심은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평가할 때 꼭 지적해 준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놀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익힐 수 있다.
- ②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③ 개개인의 내부에 있는 이기심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세가 진정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고찰의 기회가 된다.

(7) 응 용

- 증권시장놀이와 함께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가 가지는 의미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원리를 알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협동 대 협동"이라는 것이 있다.

● 진행

- - 2인이 1조가 되어 4-5조(8-10명)로 한 동아리를 만들어 진행한다.
- - 각 동아리마다 '가' '나'가 쓰여진 2개의 카드를 만들어 나누어 갖는다.
- - 놀이를 시작하면 짹끼리 의논하여 가, 나 카드 2개중 1개의 카드를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하나 둘 셋'하는 구령에 맞추어 4조가 동시에 낸다.
- - 각 동아리마다 낸 카드를 돈 계산표에 맞추어 계산하고 용지에 번 돈을 써놓고 다음 진행은 진행자의 지시에 따른다.
- - 놀이 후 동아리 내에서 '어느 동아리가 가장 많이 벌었나'와 '어느 동아리가 가장 적게 벌었나'를 비교해본다.
- - 놀이 도중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고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 해본다. (마지막 토론시간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얼마나 개인위주이고, 노력 없이 눈치보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 해 본다.)

● 유의사항

- - 진행자의 지시 외엔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보너스회에는 3배나 10배의 배당을 받게 된다. 10회의 놀이가 진행된 후에는 조별로 각각 번 돈과 잃은 돈을 계산하고 놀이 진행에 따른 평가 및 토론을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제 7 장

인권자료 및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 토론해 봅시다.
- 갈등 중재와 협상훈련
- 학생의 날 이야기
- 청소년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 2001 청소년 포럼 자료집
- 몇 가지 기법에 관하여

1. 토론해 봅시다.

사물의 연관성

세 개의 사과

길잡이

세상은 크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인간, 사회, 자연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세상을 보는 눈'은 이 세 가지를 세심하고도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든가 "이 사회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은 한편 옳지만, 한편으론 매우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 사회, 자연 이 셋을 항상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자 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과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아담이 훔쳐먹은 '지혜의 과실'인 사과입니다. 여기서 그 나무열매는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었다는 창세기의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 사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사과는 인간의 의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과는 독일의 극작가인 쥘러의 작품 「월리엄 텔」에 나오는 사과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월리엄 텔을 미워한 식민지 총독이 월리엄 텔에게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을 쏘게 했던 그 사과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월리엄 텔이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맞추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사과가 의미하는 극적인 분위기는 그러한 행복한 귀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조국을 지배하고 있는 침략자에 대하여 끊임없이 저항하고 독립을 찾는 사냥꾼 월리엄 텔의 사회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는 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과는 영국의 과학자 뉴튼의 사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튼은 사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이 법칙은 자연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과는 자

연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개의 사과가 상징하는 의식·사회·자연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사회와 자연—이것을 세계라고 부릅니다—을 생활 근거로 하여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그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와 자연에 대한 관계, 사회와 자연의 변화에 대한 의식 또는 인식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사회—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의미 없는 춤을 추고 난 다음의 공허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은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세계를 짚어지고 나갈 역군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사회와 자연에 대하여 진지하게 탐구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위의 글이 이야기하는 세 개의 사과는 무엇이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위 글에 세 개의 사과를

1) 인간의 생각(인식)

2)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3)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으로 이야기 할 때 이들 세 가지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야기 해 봅시다.

▣ 우리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집을 나왔습니다. 밥을 먹기까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면서 이 사회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어떤 사람이 신문의 정치면을 보면서 “난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생각하면 괜히 골치 아프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과 사회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 인간은 이 사회를 만들지만 반대로 사회는 인간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 것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는 기본요소이기도 하지만 사회 속에서 인간답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를 들어 설명하여 봅시다.

▣ 세계를 바라보는 일정한 견해(세계관)는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상식의 재검토

잃어버린 편지 찾기

길잡이

우리는 학생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상식적’으로 손쉽게 풀어갑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상식이라는 이름 하에 어이없이 속아 넘어 가기도 합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의문을 제기하면서 탐구하는 것은 ‘새로운 사고’의 시작일 것입니다.

●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이 사건은 프랑스의 왕궁에서 시작됩니다. 간교한 ‘느’대신의 귀부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편지가 비밀편지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편지와 슬쩍 바꿔치기를 하여 가지고 가 버립니다. 귀부인은 스스로 그것을 알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 말도 못합니다. ‘느’대신은 자기가 움켜쥔 편지를 빌미로 하여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귀부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편지를 다시 찾아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귀부인은 ‘지’경시총감에게 편지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경시총감은 편지가 ‘느’대신의 집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집을 수색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총검은 그 집의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심지어는 천장 속, 벽까지 조사하지만 결국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곤경에 처한 경시총감은 서로 잘 아는 뒤팡이라는 청년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를 찾아 돌려줍니다. 편지는 누가 봐서라도 곧 눈에 띠는 곳에 있었습니다. 방의 난로 앞에 있는 편지함 속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받아든 경시총감이 놀람과 기쁨으로 미친 듯이 돌아 가버린 뒤 뒤팡은 함께 있는 친구들과 편지를 찾는 자신의 방법과 경시총감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 'ㅈ'경시총감과 뒤팡의 편지 찾는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 두 사람의 편지 찾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 ▣ '비판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을 구별해보고,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 ▣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말이 실제로는 틀린 예를 우리 주위에서 찾아 이야기해봅시다.

관점의 문제

장자(莊子)이야기

길잡이

갓난아기에게 그가 누운 작은 방이 이 세계의 전부일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집이나 동네가 이 세계의 전부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동네가 있고 또 다른 도시가 있으며, 나아가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커서는 우리는 자기만의 눈이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을 보고 또 같은 것이라도

관점을 달리해서 볼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 이름은 '꼰'이라 하는데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른다. 새가 되면 이름을 '봉'이라 한다. 봉의 등 넓이도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른다. 움직일 때는 날으니 그 날개는 구름같이 하늘을 가리운다.

이 새는 날을 때 남해·천지를 가려고 준비한다. 『제해기』라는 책에 말하기를, 봉이

한번 남방으로 날은 때 물결치는 수면이 삼천 리이고, 올라가는 높이는 구만 리가 되며 육개월간을 두류한다고 하였다.

공중에 떠 있는 이 새는 봄철의 흰 안개와 먼지 구름의 움직임과 서로 숨을 쉬고 있는 생물들을 내려다본다. 하늘의 푸른빛이 참된 빛깔인지, 혹은 끝이 없는 거리의 결과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땅 위에 봄을 것도 똑같이 보았다.

어느 정도 깊이가 없이는 물 위에 배를 띄울 수 없다. 마당의 조그마한 용덩이에 물 한잔을 부어놓으면 겨자씨가 뜬다. 그러나 잔을 띄우려면 가라앉으니 그는 물과 잔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까닭이다.

공기도 그렇다. 적당한 깊이가 없이는 큰 날개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새를 위해서는 공기도 구만 리의 깊이가 되어야 날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머리 위의 공중에 아무 것도 없고 아무 걸릴 것도 없이 그 새는 남방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매미와 어린 비둘기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제 내가 힘껏 날아도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갈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도 어떤 때는 미치지 못하여 중간에 땅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러니 무슨 소용으로 남방에 가려고 구만 리를 올라갈 것인가?"

가까운 시골에 가는 사람이 세끼니 먹을 음식을 가지고 돌아 올 때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나 백리를 가는 이는 하룻밤 묵고 올 마련으로 쌀가루를 넉넉히 가지고 가여 한다. 또 천리를 가려는 이는 석 달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이 작은 두 생물이 무엇을 알 것인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모르고, 작은 해(年)는 큰 해의 길이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줄을 아는가? 아침에 돌아 오른 벼섯은 낮과 밤의 교체를 모르고, 매미는 봄과 가을의 교체를 알지 못한다. 벼섯이나 매미는 살아있는 기간이 짧다. 그러나 초 나라의 남방에 '명령'이란 나무가 있어 오백 세 춘추를 지냈고 옛날에 큰 춘(椿)이 있어 천세 춘추를 지냈다. 그런데 방조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아직도 여러 사람이 부러워하는 목표가 아닌가(방조는 팔백 년을 살았다고 함—편집자주) 혜자가 장자에게 가로되.

"위나라 임금이 큰 박씨를 주어서 내가 그것을 삼았더니 닷 섬을 담을 만큼 큰 박이 열렸다. 그래서 물을 담으려 했으나 너무 크고 무거워 들 수가 없었다. 바가지로 쓰려니 두 쪽으로 쪼갰더니 너무 납작해서 그런 용도에는 적합치 않았다.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깨뜨려버렸다." 장자는 대답하여, "그대는 큰 물건을 쓸 줄 몰랐던 것이다. 송나라에 손 터진 데에 바르는 약방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집은 대대로 비단 세탁을 해왔다. 어떤 이가 소문을 듣고 와서 백금을 줄 터이니 그 약방문을 팔라고 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우리는 비단 세탁만으로 큰 돈을 벌어 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하루 동안에 백금을 받고 약방문을 팔 수가 있다. 그 사람에게 약방문을 주자'고 합의를 보았다.

그 사람은 방문을 얻어 가지고 가서 오 나라 임금을 면회하고 그 방문을 주었다. 월나라에 난이 생기자 오나라 임금은 겨울이 시작될 때 장수를 보내어 월 나라와 수전을 했다. 월나라는 대패를 했고 오나라 군대가 겨울날에 터진 손을 그 방문으로 치료했다는 공로로 방문을 가져간 이는 월나라 터지 한 토막을 상급으로 받았다. 이렇게 고약의 효록은 마찬가지나 쓰는 방도가 달랐다. 여기서는 고약으로 작(爵)을 봉협 받았고, 판 사람은 비단 세탁을 하는 것에 그쳤다.

“지금 닷 섬 드는 박으로 말하면 왜 그대는 물에 띄우지 않았던가. 강이나 호수에 띄우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대는 커서 소용이 없다고 불평만 했으니! 그대는 마음이 답답한 성싶다”하니, 혜자는 장자에게 “내게 큰 나무 하나가 있어 가죽나무라 하는데 나무기둥은 울퉁불퉁하고 용기가 많아 널 판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가지는 어찌나 비틀거렸던지 잘라서 만들 것이 없다. 길 옆에 섰어도 목수가 바라다보지도 않는다. 그대의 말은 그 나무와 같으니 크고 소용이 없다. 이 세상엔 아무도 상관이 없다”하니 장자는 대답하여,

“그대는 살쾡이를 본 일이 없는가. 몸을 웅크리고 먹이를 노리고 있는 것을? 동서로 뛰고 아래 위를 가리지 않고 덤비다가 필경 함정에 빠지거나 덫에 치어 죽는다. 그와 반대로 여우는 큰 몸집을 가진 짐승으로 하늘을 가리운 구름과 같이 커도 죽 한 마리 잡을 능력이 없다. 지금 그대는 큰 나무를 가지고도 무용지물로 어찌할 줄을 모른다면 어째서 그대는 넓은 광야나 아무도 없는 동리에 심고 그 옆에서 산보하거나 그늘에서 편히 눕거나 하지 않는가?

그런 곳에서는 그 나무가 잘리거나 다른 상처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른 데에 소용이 없다고 해서 그 마음을 괴롭힐 건 없다.”

●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 ▣ 봉과 매미, 어린 비둘기의 세계는 어떻게 다른가 위 글에서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 ▣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모른다’는 말을 함께 새겨봅시다.
- ▣ 어떤 물건이나 처방은 쓰임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 이야기해봅시다.
- ▣ 어떤 사람은 “너는 왜 세상을 한쪽으로만 보려고 하니? 자꾸 나쁜 면만 보면 사회는 나쁘게 보이고, 좋은 쪽만 보면 좋게 보이는 거 아니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렇다면 사회를 보는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웃에 대한 관심

지나쳐간 사람들

길잡이

우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이기주의로 팽배해지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날로 각박해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올바른 사회가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는 사회라면 그 것은 아마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유난히 풍랑이 거칠던 어느 날, 물고기 육이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밀려나와 몹시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아니, 이게 어찌된 셈일까. 이렇게 물에 떠밀려 올라왔으니 이제 혼자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 옳지, 그래도 난 참 운이 좋군! 헐레벌떡 달려오는 이 남자에게 부탁을 해야지, 나를 물 속에 되넣어달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파도에 밀려와서 이렇게....”

“여보게, 난들 왜 안 도와주고 싶겠나, 응? 하지만 난 급히 저 아래로 내려가 봐야 한다네.... 난 지금 어부들의 미망인들을 도우려는 모임에 가는 길인데.... 좀 늦었어.... 안 됐네”

‘하긴 그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 사람은 정말 시간내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렇지, 저기 또 누가 온다! 혹 이 양반이 나를 물 속에 되던져주지 않을까.....’

“저어 죄송합니다만, 저는..... 말하자면 바닷가에 얹힌 배나 다름없지요. 그러니까..... 저를 집어서 물 속으로 좀 던져주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난 뭐, 귀찮으시면 발로 차넣으셔도 좋습니다. 막대기든 뭐든 눈에 띄는 것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가만 있자..... 내가 지금 이 물고기를 물 속으로 되던져준다 해도 또 다시 밀려나와서 허우적거리겠지..... 그렇다고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아마..... 젠장, 나도 모르겠다’

‘정말 생각도 많은 사람이군. 하지만 그 사람이 눈치라도 채주길 바랬는데..... 내가 이렇게 숨이 가쁘다는 것을..... 으웅, 저기 한 여인이..... 오는군..... 그래, 이 여인은..... 날

도와줄 거야.....'

"사모님, 저는 꼼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형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육이는 그 부인에게 자기 사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자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꼭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부인은 육이를 무척 동정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죠? 돋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몇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이 겪는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는 바로 자신의 탓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말은요, 이제 당신이 물 속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시는 해변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 다음으로는요, 누가 매번 당신을 도와주다 보면 당신은 어떤 고치기 어려운 의존심만 키우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당신에게 해가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한 번 곰곰이 궁리해보셨으면 해요..... '나는 어떻게 스스로 내 자신을 도울 수 있을까'하고 말이예요. 그럼 생각해보실 동안 저는 갔다가 몇 분 후에 다시 오도록 하지요"

"고맙... 습니.... 다....." 그 분이 떠나간 후 육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기운이 빠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게..... 내 탓이었는지도 몰라.....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선 그 부인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애, 혁혁혁..... 정말..... 그 여자는..... 영리했어.....' 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거기 다른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구! 살려주세요....." 육이는 한 번 더 애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육이의 애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픔이 가득 찬 얼굴로 느릿느릿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바다란 정말 잔인하기도 하군' 육이는 저 아래 바닷가로 사라져 가는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기진맥진하여 겨우 두 번 꼬리를 퍼덕였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닷가는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조류가 밀려와 육이를 바다로 되신다고 갔습니다..... 육이와 얘기를 나누려고 돌아온 그 부인은 그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회한한 일이군! 하긴, 나는 알고 있었어, 그가 정말 하려고만 한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인은 저쪽 바닷가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 물고기 육이가 처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위의 글에는 도움을 청하는 물고기 육이를 지나치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지나쳐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람이 지나쳐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람이 지나쳐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사람이 지나쳐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네 명의 사람들은 모두 물고기 육이를 구해주지 않은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 위의 네 명은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지 다음에서 들어봅시다.

1) 다음 사람의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2) 다음 사람의 어려운 그 사람 자신에게 돌리고 혼자 해결하도록 하면서 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

3) 자기 자신의 생활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돋지 않는 사람

4) 생각만 요리조리하며 다른 사람을 돋지 않는 사람

▣ 물고기 육이가 죽게된 가장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 나는 4명의 인물중 어디에 속하는지, 혹 속하지 않는다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고 타인의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갈등중재와 협상훈련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정책실장)

1. 속담 속에 비친 한국의 갈등/분쟁 해결 방식은?

- 예) ▲ 홍정은 불이고 싸움은 말린다.
▲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다.
▲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번씩 패죽야 길이 든다.
▲ 뚱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2. 갈등/분쟁의 개념과 유형

(1) 갈등(Conflict) :

- ◇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이해관계나 목표가 상충되고 있는 상태
- ◇ 분쟁이 잠재된 상태, 대연하는 상태
- ◇ 분쟁의 원인, 내용

(2) 분쟁(Dispute) :

- ◇ 두 명 이상의 당사자들이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이해관계나 목표를 놓고 다투는 행위
- ◇ 갈등이 표면화된 상태

(3) 갈등/분쟁의 역기능과 순기능

1) 부정적 기능

- ◇ 인간과 자연, 사회(질서-체제-인간관계)를 손상 혹은 파괴
- ◇ 물질적, 정신적, 감정적 자원의 집중적 소모

2) 긍정적 기능

- ◇ 사회(조직, 제도, 관계) 발전에 따른 필수적 현상
- ◇ 갈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보다 발전된 체제, 관계 형성
- ◇ 갈등의 분출, 해결과정에서 기존에 누적된 혹은 잠재된 문제 발견, 확인, 처리
- ◇ 갈등 해결과정에서 당사자 상호간 오해 해소, 이해증진, 관계발전

◇ 외부와의 갈등은 그 집단 구성원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강화해주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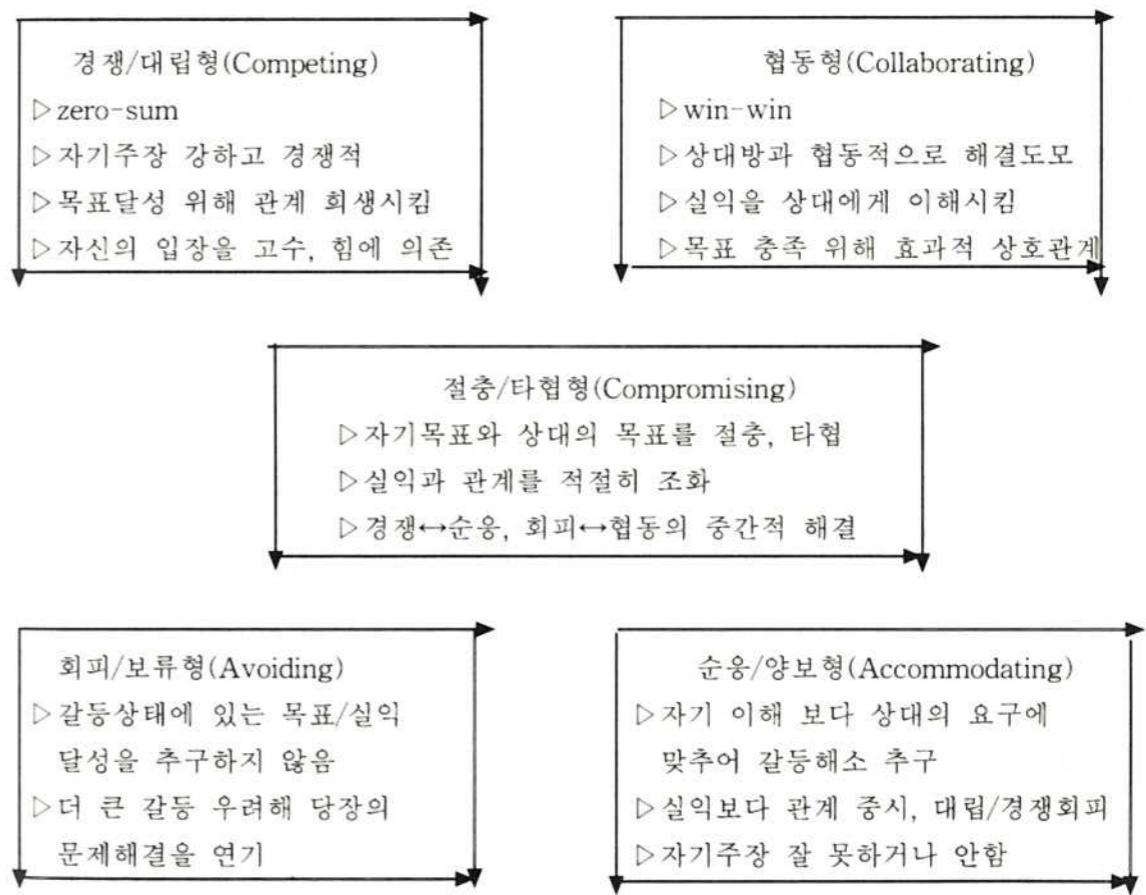
(4) 갈등/분쟁의 5가지 유형

- 1) 이해관계 갈등 (Interest Conflict)
- 2) 사실관계 갈등 (Data Conflict)
- 3) 가치관 갈등 (Value Conflict)
- 4) 상호관계 상의 갈등 (Relationship Conflict)
- 5) 구조적 갈등 (Structural Conflict)

* 생각해봅시다 1 : 통일문제는 어떤 유형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가?

* 생각해봅시다 2 : 여성문제는 어떤 유형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가?

3. 갈등/분쟁 해결의 5가지 유형 : THOMAS-KILMANN 테스트



4. 갈등/분쟁의 해결과정

(1) 협상(Negotiation, 協商) :

- ◇ 외부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 갈등/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 ◇ Bargaining(홍정, 교섭, 거래), Compromising(타협), Deal(거래) 등과 구별

(2) 재정(Arbitration, 裁定) :

- ◇ 분쟁 당사자들이 요청, 또는 사전 규정이나 합의에 의해 중립적인 제 3자(기관 또는 전문가)가 분쟁 사안을 심의, 최종 판정(Decision)을 내리는 것
- ◇ Bonding Arbitration(구속력 있는 재정) : 당사자 승복의무
- ◇ Non-Binding Arbitration(구속력 없는 재정)

(3) 중재(Mediation, 仲裁) :

- ◇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들간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돋는 활동
- ◇ 재정과 달리 중재인은 분쟁의 쟁점에 대해 판정을 내리거나 해결책을 강제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중재 전 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한다.

(4) 문제해결 회의진행(Facilitation) :

- ◇ 여러 명이 참가하는 문제해결 또는 합의 만들기를 위한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역할

(5) 중립적 사실조사(Neutral Fact-finding) :

- ◇ 분쟁 당사자간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을 때 제3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조사를 대행해 주는 것

(6) 조정(Conciliation, 調停) :

- ◇ 당사자들이 직접 또는 제3자가 개입해 갈등/분쟁을 종식, 수습, 해결하는 과정

* 생각해 봅시다 3 : 평화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정의

- ◇ 소극적 평화 : Negative Peace : Absence of Conflict
- ◇ 적극적 평화 : Positive Peace : Presence of Justice(J. Galtung: 갈등/분쟁의 구조적 요인이 제거된 상태)

* 생각해 봅시다 4 : 사회정의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정의

1) 본질적 정의(Substantive Justice) : 결과의 공정함, 공정성의 기준은 당사자마다 다르다.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채택 혹은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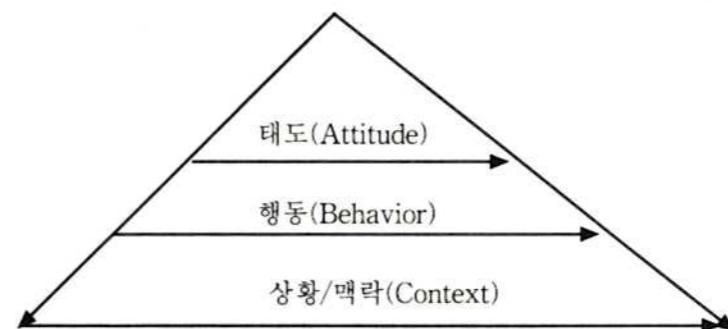
- ◇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 ◇ 보상적 정의(Compensatory Justice)
- ◇ 감쇄적 정의(Subtractive Justice)
- ◇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2) 과정적 정의(Procedural Justice) :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공정함.

5. 협상

(1) 협상의 4원칙

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Separate the People From the Problem)



* 생각해 봅시다 5 : 상대에 대한 인식, 태도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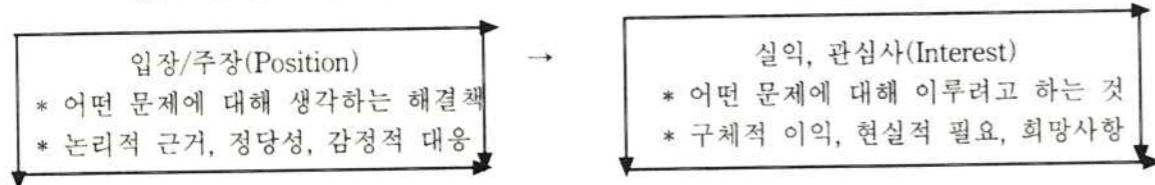
- 내가하면 사랑, 남이하면 불륜
- 내 문제는 상황, 남의 문제는 성격
- 선부른 단정, 넘겨짚기, 편견, 지나친 일반화



- 주어를 사람이 아닌 문제로!
- 상대의 태도/자세가 아닌 문제되는 행동/사건에 초점
- 상대방도 문제에 초점 맞추도록 유도
- 상대의 오해, 편견,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을 기회 만들기
- 상대의 강한 감정에 대처하는 기법

2) 입장이 아닌 실익에 초점을 맞춰라(Focus on Interests, Not Positions)

ex) 오렌지, 도서관 창문



* 생각해 봅시다 6 : 실익과 관심사를 전달하기에 유익한 자기표현 방식

- “나 - 전달법”(I - Message)으로 자신의 관심사 표현
- 상대방을 입장에서 실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질문법
Why or For What?

3) 상생 적인 대안을 개발하라 (Invent Options for Mutual Gain)

* Brainstorming, 파이 키우기

4)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라 (Insist on Using Objective Criteria)

* 공정한 절차부터(Not Big Deal, But Ground Rule)

6. 중재

(1) 중재의 3원칙

1) 중립성(Neutrality, Impartiality) : 과정 공정하게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음

* 생각해 봅시다 7 : 무엇이 중립인가?

- 소극적 중립 : 엄정 중립, 제한적, 현상 유지적
- 적극적 중립 : 넓은 의미의 중립, 분쟁 당사자간 힘의 불균형, 정보/자원의 편중 상태일 때 균형 잡기 등

2) 자율성(Voluntariness, Autonomy)

3) 비공개(Confidentiality)

(2) 중재의 절차

1) 준비단계 :

- 분쟁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중재요청
- 중재 참가자 선정
- 중재 절차 및 전략 구상

● 중재 참가자 교육(사전 오리엔테이션)

● 중재시간, 장소, 비용 등 협의

2) 1단계, 도입부(Introduction)

- 중재의 3원칙
- Ground Rule
- 우호감, 친밀감 조성

3) 2단계, 이야기 듣기(Story-Telling)

- 적극적 청취(Active Listening)
- 공감
- 말에 가시빼기(Paraphrasing)
- 효과적인 질문하기

4) 3단계, 쟁점규명(Issue-Clarifying)

- 입장과 이익의 분리(Position-Interest 분리)
- 이익(Interests), 요구(Needs), 문제(Problem)의 탐색

* 생각해 봅시다 8: 모든 것이 중재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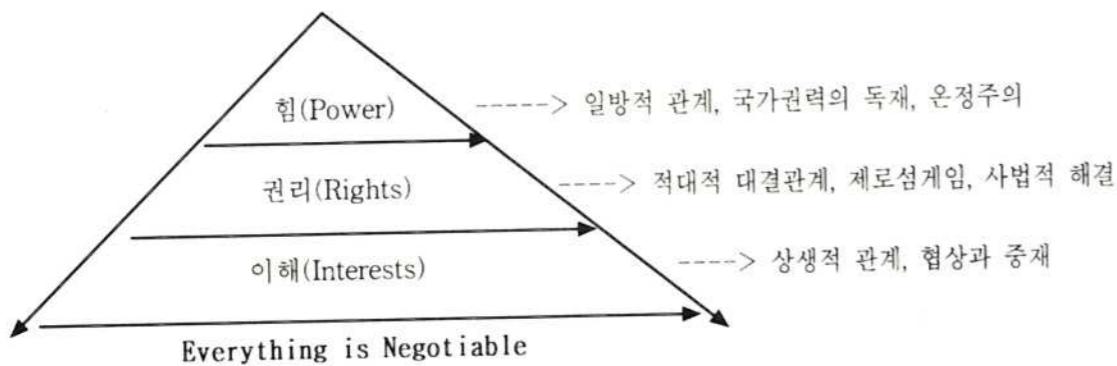
→ 인간의 기본적 요구가 인위적으로 억압되면 분쟁은 불가피함. 요구 충족되기 전까지 분쟁 해결되지 않으며 대체로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의, 식, 주
- 정체성(Identity), 집단적 소속감
- 생명, 신체의 안전(Security), 집단적 안보
- 기본적 자유, 자율성(Control over One's Life)
- 주체로부터의 인정(Rognition)
-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

→ 이러한 기본적 요구는 타협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킬 자원은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win-win 해결책이 가능하다.

* 생각해 봅시다 9: 어떤 사건이 중재에 적합한가?

- 관계에 갈등이 있으나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경우
- 이해가 있어 능숙한 중립적인 사람의 개입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때
- 세 삼자 개입으로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때
-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재평가 또는 해결할 용의가 있을 때



5) 4단계. 문제해결(Problem-Solving)

- Brainstorming
- Reframing
- Search for Common Ground
- Transforming Relationship
- Fragmentation
- Caucus

6) 5단계. 합의(Agreement)

- Types of Agreement
- Joint-Monitoring
- 합의서 작성(법)

THOMAS-KILMANN CONFLICT MODE INSTRUMENT

1. A. 나는 때때로 문제해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한다.
 B. 나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사안을 협상하기보다는, 상대방과 합의한 사안을 강조하고자 노력한다.
2. A. 나는 타협적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
 B. 나는 그와 나의 모든 관심 건들을 다루기를 시도한다.
3. A. 나는 평소 나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단호한 편이다.
 B. 나는 상대의 감정을 달래고 서로의 관계를 견지코자 노력하는 편이다.
4. A. 나는 타협적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
 B. 나는 가끔 다른 사람의 바람(희망)을 위해 나 자신의 바램을 희생한다.
5. A. 나는 시종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협조를 항상 구한다.
 B. 나는 쓸데없는 긴장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도록 노력한다.
6. A. 나는 스스로 불쾌를 놓는 것을 피하고자 노력한다.
 B. 나는 나의 입장(주장)을 달성코자 노력한다.
7. A. 나는 어떤 문제(사안)에 관해 숙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지체시키려고 한다.
 B. 나는 나의 조건(안)을 다른 것들과 교환하려고, 포기한다.
8. A. 나는 평소 나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단호하다.
 B. 나는 모든 관심사(관계건)와 문제(사안)들을 즉시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9. A. 나는 차이들이 언제고 염려(우려)할 만하지 않다고 느낀다.
 B. 나는 내 길대로 가려고 노력할 때가 있다.
10. A. 나는 나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단호하다.
 B. 나는 타협적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
11. A. 나는 모든 관심사(관계건)와 문제(사안)들을 즉시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B. 나는 상대의 감정을 달래고 서로와의 관계를 견지코자 노력하는 편이다.
12. A. 나는 때로는 논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입장채택을 피한다.

- B. 그가 만일 나의 어떤 입장채택을 허용한다면, 나도 상대가 그의 입장을 택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13. A. 나는 중용(중도)을 제안한다.
B. 나는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밀고 나간다.
14. A. 나는 상대에게 내 생각(의견)을 말하고, 그의 생각을 묻는다.
B. 나는 상대에게 내 입장의 논리성과 유익성을 보여주도록 노력한다.
15. A. 나는 상대의 감정을 달래고 서로의 관계를 견지코자 노력하는 편이다.
B. 나는 긴장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도록 노력한다.
16. A. 나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B. 나는 자신의 입장의 장점을 상대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7. A. 나는 평소 목표를 추구하는데 단호하다.
B. 나는 쓸데없는 긴장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도록 노력한다.
18. A. 상대가 좋다면(행복하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를 유지토록 한다.
B. 그가 만일 나의 어떤 입장채택을 허용한다면, 나도 상대가 그의 입장을 택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19. A. 나는 모든 관심사(관계건)와 문제(사안)들을 즉시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B. 나는 어떤 문제(사안)에 관해 숙고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지체시키려고 한다.
20. A. 나는 우리의 차이를 즉시 다루도록 노력(시도)한다.
B. 나는 쌍방의 득실의 공정한 결합을 찾고자 노력한다.
21. A. 나는 협상접근시 상대의 바람(희망)을 배려하려고 노력한다.
B. 나는 언제나 바로 문제논의에 들어가는 성향이다.
22. A. 나는 피차간의 당장의 입장을 알려고 한다.
B. 나는 나의 희망을 주장한다.
23. A. 나는 자주 우리 모두의 희망을 충족시키는데 관심을 갖는다.
B. 나는 때때로 문제해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한다.
24. A. 상대의 입장이 그에게 매우 중요하다면, 나는 그의 희망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B. 나는 상대가 타협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5. A. 나는 상대에게 내 입장의 논리성과 유익성을 보여주도록 노력한다.
B. 나는 협상접근시 상대의 바람(희망)을 배려하려고 노력한다.
26. A. 나는 중용(중도)을 제안한다.
B. 나는 거의 언제나 우리 모두의 희망을 충족시키는데 관심 갖는다.
27. A. 나는 때로는 논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입장채택을 피한다.
B. 상대가 좋다면(행복하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를 유지토록 한다.
28. A. 나는 평소 나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단호하다.
B. 나는 평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협조를 항상 구한다.
29. A. 나는 중용(중도)을 제안한다.
B. 나는 차이들이 언제고 염려(우려)할 건 아니라고 느낀다.
30. A. 나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B. 나는 언제나 상대와 문제를 함께 나누며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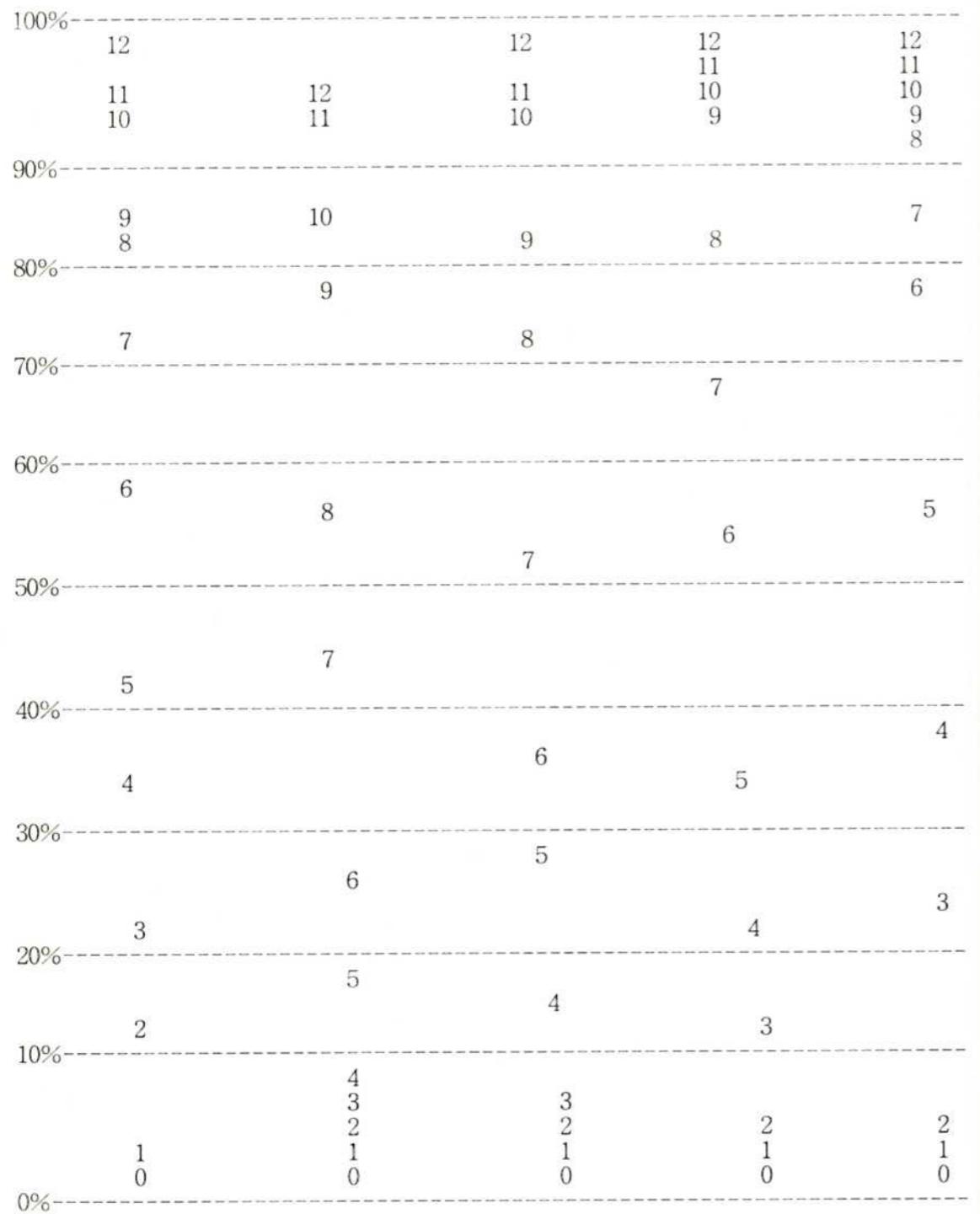
NEGOTIATING STYLE ASSESSMENT(Alexander Hiam)/Descriptive Style Assessment

1.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싸운다(분투한다). 1 2 3 4 5
2. 나는 함께 나눌 필요를 찾아 협상의 초점으로 삼기를 원한다. 1 2 3 4 5
3. 나는 차이를 분할함으로써 장시간의 협상을 피하고 싶다. 1 2 3 4 5
4. 나는 불쾌한 갈등보다 우호적인 만남을 선호한다. 1 2 3 4 5
5. 나는 협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 1 2 3 4 5
6. 내게 힘이 있을 땐, 내 요구를 첫째로 충족시키기 위해 힘을 사용한다. 1 2 3 4 5
7. 나는 갈등을 문제 해결식 협동노력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1 2 3 4 5
8. 나는 쌍방에게 분명히 공정한 중도를 가끔 제의한다. 1 2 3 4 5
9. 나는 우선은 좋은 장기적 관계의 유지이다. 1 2 3 4 5
10. 나는 나의 불만과 이해문제로 다른 이와 맞서기를 원치 않는다. 1 2 3 4 5
11.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한다면 좋은 논쟁을 개의치 않는다. 1 2 3 4 5
12. 상대방 정보의 공유를 권장하기 위해 내 카드를 탁상에 올려놓기를 선호한다. 1 2 3 4 5
13. 나는 상대가 원하는 한 즐거이 타협한다. 1 2 3 4 5
14. 나는 상대의 나로부터의 기대에 따라 강한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15. 나는 협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자신감이 없다. 1 2 3 4 5
16. 나는 상대가 나의 필요와 입장에 관해 너무 많이 알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1 2 3 4 5
17. 보다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문제를 새롭게 보도록 힘쓴다. 1 2 3 4 5
18. 단순 타협이 가능할 때는 승부 겨루기에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19. 나는 꼭 해야 할 만큼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1 2 3 4 5
20. 누군가가 나와 관련된 문제를 가질 때 나는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21. 나는 속임수 허세(브리핑)나 위협이 협상시 신기하게 통할 수 있다고 본다. 1 2 3 4 5
22. 나는 협상시 상대의 정직과 신뢰를 기대하고 그들은 나를 신뢰할 만하다고 본다. 1 2 3 4 5
23. 내 의견은 합리적 방법으로 차이를 나누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 1 2 3 4 5
24. 혹자는 날더러 쉽게 포기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1 2 3 4 5
25. 많은 경우 협상에서 얻어지는 게 별로 없으니 당신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1 2 3 4 5

협상 스타일 점수표

	경쟁적(쟁취) Competing	협력적(문제해결) Coiaborating	타협적(나누기) Compromising	회피적(철회) Avoiding	순응(유연) Accommodating
1				A	B
2		B	A		
3	A				B
4			A		B
5		A			B
6	B			A	
7			B	A	
8	A	B			
9	B			A	
10	A		B		
11		A			B
12			B	A	
13	B			A	
14	B	A			
15				B	A
16	B				A
17	A				B
18			B		A
19		A			B
20		A	B		
21		B			A
22	B			A	
23		A			B
24			B		A
25	A				B
26		B	A		
27				A	B
28	A	B			
29			A	B	
30		B			A
계					

경쟁적(쟁취) Competing	협력적(문제해결) Coiiaborating	타협적(나누기) Compromising	회피적(철회) Avoiding	순응(유연) Accommodating
----------------------	----------------------------	--------------------------	---------------------	-------------------------



3. 학생의 날 공휴일 제정에 관한 이야기

학생의 날 공휴일 제정운동 선언의 의미

참으로 기쁘고 흐뭇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다. 단 2~3년 전만 해도 청소년이란 단어에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양장스타일의 교복과 운동화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었다. 학생답다는 말, 그 말의 의미는 곧 인간다워야 함보다 오히려 인간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미덕이었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불만이나 주장은 교권이란 이름으로, 혹은 경로 사상의 이름으로 금기 시 되어왔다. 결국 학생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 하나 때문이다.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얹혀 있으랴!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그 누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는가! 학생도 그 이해관계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양보하는 방법도 배우게 하는 것이 더 큰 교육이라고 본다.

지난 달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는 두발문제를 갖고 진귀한 결정방식 하나가 진행되었다. 얘기인 즉 두발 규제 문제를 갖고 학생, 교사, 학부모 9명씩 27명이 모여 논의를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규제를 풀어 줄 것을, 교사와 학부모는 계속된 규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과는 18:9로 두발 규제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과연 민주적 절차였을까 아니면 학생에 대한 또 하나의 폭력이었을까? 그 이후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사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항임을 강조하고 계시고 규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학생들의 두발문제가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나서야만 했던 사안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누가 자신의 문제를 갖고 조언이 아닌 결정을 내려주고 그 결정에 따르라고 말하는가?

아쉽지만 어쩌랴, 그 것이 현실인 것을...

그러던 2000년 11월, 참으로 가슴 후련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총사단,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녹색연합 등의 청소년들이 모여 '학생인권을 고민하자'의 주제로 청소년 포럼이 열었다. 학생들은 이날의 포럼을 통해 '학생의 날 공휴일 제정운동 선포식'을 갖았다.

이전까지 고민해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우리 사회는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 관련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대책마련에 책임소재에 호들갑을 뜯다. 결국 토론회를 개최할 적마다 전문가들 잔치에 학생 1명 앉혀놓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긴 하는데 답답한 심정 가눌 수가 없었다.

언제나 학생 없는 학생문제일 뿐이지...

그러나 이날의 학생들은 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기성세대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학생 인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당당히 학생인권의 8가지 항을 선언하였다.

지금까지 어른들의 논리처럼 '학생은 미래의 주인공' = 현재는 규제의 대상이라는 등식을 거부하고 당당한 현실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현실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동반자임을 밝힌 것이다.

이는 '의무는 등완 시 한 채 무슨 권리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그 어떠한 구차한 논리보다도 가슴 뚫리는 선언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학생의 날 공휴일 제정은 단순한 하루의 휴식이 아닌 새로운 학생관의 정립을 위한 출발의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공휴일 제정 운동을 벌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을 계속하고 있으며 참교육 학부모회 여러분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이 한 번의 이벤트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청소년운동이 교육운동과 다르게 일과성 이벤트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연대와 학생의 인권을 위한 지원활동을 통해 보다 힘있는 운동으로 자리 메김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학생의 날 공휴일 제정운동이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고 학교와 가정, 사회 속에서 평화와 공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이바지 할 것을 굳게 믿고 싶다.

<2000 학생의 날 기념 학생권리 선언문>

1. 우리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3. 우리는 비인격적인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우리는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5. 우리는 신체적 장애각 있을 지라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6. 우리는 노동권을 가지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7. 우리는 자유로운 모임과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8. 우리는 학생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부당한 억압에도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학생의 날' 공휴일 제정 운동 선포문

1929년 11월 3일, 일제의 탄압과 불의에 항거하는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다. 조국독립을 위한 뜨거운 열망과 젊은 피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많은 희생을 가져온 이 날의 학생독립운동은 일제 탄압에 저항한 대표적인 민족운동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3·1운동에 비할만한 민족적 장거였다.

그리고 이 날의 정신은 해방 후에도 이어져 4·19혁명과 5·18 민중항쟁으로 되살아났으며,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다. 조국과 정의를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결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은 민족의 장래를 짚어질 우리 학생들에게 뚜렷한 좌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동안 민족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이 날,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여 기려왔다. 그 날의 역사를 되새기며 옛것을 여미고, 민족과 정의를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자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세태는 이처럼 숭고하고 소중한 날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 일년 365일의 하루이자 이런 저런 혼란 기념일 중의 하나로 생각하며, 형식적인 기념식을 치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동서고금을 돌아볼 때, 민족적인 장거를 잊어버린 민족이 오랜 번영을 누린 예는 없었다. 특히 국가간의 무한경쟁에 접어든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젊은 학생들의 정열과 패기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날 조국독립과 민주정의를 위해 일어선 젊은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희생을 오늘에 되살리고, 이를 영원히 계승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학생들은 11월 3일, 역사적인 이 날을 공휴일로 제정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며, 온 국민에게 이 날의 교훈을 소중히 기억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은 이 날을 선배들의 결연한 의지와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스스로의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뜻을 사회 각계에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학생의 날' 공휴일 제정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선포한다.

2000년 11월 3일

학생의 날 행사 참가자 일동

홍사단 고등학교아카데미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 녹색연합 아이지엘

'2000 학생의 날 기념 학생권리 선언문

1929년 11월 3일, 나라를 잃은 서러움에 눌려있던 젊은 학생들의 저항의식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학생에서 시작하여 온 민족으로 이어진 이 저항의 불길은 걸림을 수 없이 번져만 갔고, 그러한 열기는 4.19혁명과 5.18민중항쟁으로 이어져 지금까지도 우리들 가슴속에 살아 내려 오고 있다. 지금! 학생들의 인권은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의 학생들에게서는 70년 전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강한 정신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 학생이 위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기약하면서 우리들의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아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한다.

1. 우리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취미 활동과 인간관계 형성 등 사생활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게되었다.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소지품 검사 또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하나의 행위이다. 이제 학생에게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2.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학생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만이 아니다. 학생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표현의 방법과 내용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다.

우리는 자기다움을 당당히 표현할 권리가 있다.

3. 우리는 비인격적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문제는 "가해져야 하느냐", "규제되어져야 하느냐"의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체벌이 학생 통제의 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상식 선을 벗어나 폭력적 형태의 무차별적인 체벌로 이어져 결국 학생이 입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는 심각할 수 있다.

더 이상의 비인격적 체벌을 반대한다.

4. 우리는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청소년기는 올바르게 성장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숙해야 할 시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해지는 지각없는 이들의 성적 학대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정서를 형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성적도구가 절대 아니다.

5. 우리는 신체적 장애가 있을지라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정규 학교의 대부분은 시각, 청각, 장애 학생을 교육할 만한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특수학교 또한 시설과 전문교사의 수준, 숫자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교육 예산의 지원이 모자람으로 인한 장애학생의 고통은 가정으로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신체적 장애에 있을지라도 평등하고 조화롭게 학습할 권리가 있다.

6. 우리는 노동권을 가지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 고용법"상에 사업장에서의 미성년자 고용은 어렵게 되어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시간제로 일하는 청소년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여아들의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어 유흥업소로 빠져나갈 여지 또한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저임금과 노동강도 등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는 자유롭고 건강하게 노동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7. 우리는 자유로운 모임과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와 학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알아야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모임이나 활동에 어떠한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로써 우리의 올바른 의견을 학교와 사회에 전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으로 발전에 공헌해야하는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

8. 우리는 학생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부당한 억압에도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항상 강자에 의해 쉽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러나 그런 침해에 대해서 항상 침묵해야 학생다운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 학생이 부당한 대우와 인권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한다.

이제 우리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아닌 당당한 현실의 주인임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바이다.

2000년 11월 3일

'2000 학생의 날 기념 행사 학생기획단 일동

(서울흥사단고교아카데미, KSCM, 녹색연합아이지엘)

4.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권혜진 청소년 인권운동가

1. 청소년에 대한 관점 정리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이라고들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주변인에 더 이상은 아니라는 뜻이다. 언제나 청소년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골치 아픈' 존재였다. 날로 청소년의 범죄가 양과 질적으로 늘어간다고 하는 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청소년은 주변인 그 이상인 문제 집단으로 인식되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청소년 관에 대해 한 번쯤 되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하는 대에 있어 지금에 학교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학 입시라는 작은 문턱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고 거기서 낙오하는 학생 청소년은 문제 학생이라는 등식에서 교육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논하면서 그 원인을 덮어두고 마녀 사냥식의 청소년 규제(보호의 이름으로)는 문제 해결의 도움이 될 수 없다. 청소년 집단은 현 사회 구성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1929년 광주 학생의거와 4·19 혁명 등 사회 변혁기에 있어 청소년은 그 누구도 이루어 내지 못한 일을 해냈던 것이다. 이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80년대 '학생회장 직선제 운동'과 90년대 학생 복지 개선을 위한 운동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 운동은 스스로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인이 아닌 '현실 사회의 당당한 주체'임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청소년의 사회참여 운동의 흐름

지난 99년 서울 대영 중학교에서 C·A(클럽 활동) 엔지오 탐방반이 개설되었다. 청소년이 직접 사회 문제의 체험을 통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엔지오 탐방반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현 국제민주연대)에서 제3세계 아동 인권과 다국적기업의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는가 하면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탐방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활동 등을 펼쳤다. 이후 홍사단과 국제민주연대 등은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사회참여 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또 다른 한편에선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녹색연합의 청소년 모임 '아이지엘'(나는 지구를 사랑한다의 의미)과 환경운동연합 청소년 모임 '푸른소리' 등은 미래 세대 환경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지엘은 환경 호르몬의 원인인 컵라면의 용기를 종이 용기로 바꾸는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세만금 간척사업의 문제를 알리고 이 사업을 막기 위해 헌법 재판까지 준비중에 있다. 푸른 소리는 서울 지역의 산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과 쓰레기 청소 등의 활동을 통한 환경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홍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와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M) 등은 학생의 날 공휴일 제정운동을 통해 청소년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인 운동으로 단순 봉사점수 이수와 어른들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활동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그 참여의 내용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새롭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정착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깨닫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넘어 현실 사회의 책임성 있는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을 갖게 되는 좋은 교육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3. 청소년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한계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내용은 청소년 활동이기 이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 내지는 규제를 위한 성인 중심의 활동이라고 봐야한다.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운신의 폭이 점점 줄여나가는 효과를 내고 말았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시민조차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치 않아도 될 정도다. 경제력을 갖고 있는 몇몇 성인 중심의 레저 활동공간과 유홍 시설말고는 말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이러한 유홍시설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10대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와 맞는 활동의 내용과 공간은 마련해 주고 있지 않다. 물론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복지와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그다지 효과적으로 청소년을 끌어안고 가기에는 시설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따름이다. 학교와 연계되어진 방과후 활동도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아이들에게 고리타분한 강연식의 프로그램으로는 그들에게 동기부

여를 줄 수 없다.

4. 지역사회와 청소년 활동

지구화의 물결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시 지역화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로 사람들은 거시적인 정치·경제 문제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과 복지, 교육 문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랑천 오염의 문제나 일산의 러브호텔로 인한 문제 등이 그 것이다. 이는 가치기준이 모호한 이익집단간의 이해문제가 아닌 가치기준이 명확한 환경과 교육의 문제로서 청소년활동의 매뉴얼로 접근 가능한 부분일 수 있다고 본다. YMCA 녹색청소년단은 몇 해 전부터 중랑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성인사회의 활동력보다 더 성과와 시민참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있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에 있어 더 없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지도 그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과 유해환경을 조사하여 지도화 하고 지역의 청소년 공간의 현실을 알아내며 동시에 청소년이 원하는 도시를 구상하여 그려내는 과정 속에 지역사회의 이해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이해를 돋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이에 있어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기획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은 기본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연관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현안 문제를 고려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청소년 단체간의 프로그램 및 인력에 대한 교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5. 청소년의 자치 활동과 지역사회의 연계 방안

요즘 청소년의 꿈은 과학자나 판사가 아니다. 옛날 얘기다. 물론 부모의 바람과는 상관없다. 오히려 매스미디어의 발전 속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댄스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길거리에서 춤 연습을 하고 있는 10대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아이들에게 공부나 집을 강요하다간 오히려 반발을 사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다양한 꿈과 이해를 갖고 산다.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

노원 나눔의 집 청소년 교실은 댄스를 하기 위해 집을 나오거나 밖에서 헤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댄스팀을 구성하여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에서 우려하는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그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이루거나 취미활동의 영역으로 인정해 주는 성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발적인 청소년들의 활동을 자치활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정기적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노원 나눔의 집과 도봉지역의 청소년 단체 '품', 구로시민센터 등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6. 자원활동과 지역교사회의 연계 방안

흔히들 자원봉사의 개념을 일손 돋기로 한정하여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어느 장애인 시설의 한 장애인은 그렇게 오는 자원봉사자를 경멸하는 시를 썼다.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봉사자의 손길이 밉다면서 말이다.

자원봉사의 개념이 이제 자원활동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바로 누구를 돋기 위한 활동이 아닌 자신을 찾아나가는 자기 개발의 개념으로 말이다. 청소년에게 있어 이러한 관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숙제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고작 찾는 곳은 관공서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 이 곳에서 한다는 일은 결국 복사 업무와 같은 심부름일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 현안문제의 참여를 통해 물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타 지역과의 연계 방안이다. 특히 도시 지역의 자치구와 농촌 지역의 자치구와 함께 지역간 교류를 위한 도시청소년의 농촌봉사(혹은 농촌 체험) 활동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여름 방학 등을 이용하여 농촌의 일손을 돋는 등의 활동을 통해 도시지역 사회와 농촌지역간의 농산물 직거래 등의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미 홍사단과 구로시민센터 등에서 매년 활발하게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7. 결론

물론 이러한 활동이 입시 등 흔히 말하는 '학생 본연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고 얘기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 입시를 위한 학교 교육을 등완 시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 교육 정책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지난 해

'11월 3일 학생의 날 공유일 제정 운동'에 참여했던 몇몇 학생은 단체 활동의 공적이 반영되어 대학에 특차 입학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결국 지역사회의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는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의 놀이와 참여 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더 없이 좋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전문 기관과 지역의 복지관, 지역 청소년 단체, 청소년 지도위원 등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001. 10. 5

청소년 학회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토론 자료

5. 2001 청소년 포럼 자료집

지상최대 개그포럼

2001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포럼

'청소년 인권과 청소년 보호법'

■ 일 시 : 2001년 11월 2일(금) 18:00

■ 장 소 : 흥사단 3층 강당

주최 : 2001 학생의 날 학생기획단

후원 : 서울흥사단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녹색연합 · 서울특별시

지상최대 개그포럼

- 목 차 -

1. 토론회 순서 -----
2. 제1주제 발제문(이주현 사무관) -----
3. 제2주제 발제문(이동연 사무차장) ---
4. 청소년 보호법 원문 -----
5. 1999, 2001 청소년 인권 선언문 -----

"학생의 날은 공휴일입니다"

- 포럼 순서 -

- ◎ 인사 말씀 ----- 18:00 ~ 14:10
유종열 서울 흥사단 대표
- ◎ 1부 ----- 18:10 ~ 19:20
주 제 : 청소년 인권과 청소년 보호법
발제1 : 이주현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관
발제2 : 이동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사회 : 홍혜진 녹색연합 해오름
- ◎ 휴식 ----- 19:20 ~ 15:30
- ◎ 배심원 판결 ----- 15:20 ~ 17:00
정리 발표 : 발제1, 2
배심원단 회의 : 배심원장
배심원 판결
정리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이주현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관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이 주 현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관

1. 들어가는 말

가. 청소년보호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발달단계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자라느냐 하는 것은 향후 성인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완전하게 자란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 나아가 사회·국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각 국은 청소년보호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선정,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보호의 세계기준이라 할 수 있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도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the child, by reason of his physical and mental immaturity, needs special safeguards and care, including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before as well as after birth)라고 전문에 명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최근의 추세는 종전 가정의 역할로 국한되었던 데 반해 오늘날은 사회와 국가의 영역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심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다원화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로 97년부터 청소년보호를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인식하고,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동시에 동법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행정조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나. 청소년유해환경 및 접촉실태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 문제가 국가적·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실

제 기성세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환경은 우리의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각종 유해한 환경을 사회에 만연시켜 호기심 많고 이성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원히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유해환경과 실제 동 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실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해매체물

가장 전통적인 유해분야로 옛날에는 도색만화정도를 유해매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으나 매체문화의 발달 및 정보화의 진전 등에 따라 유해매체물도 다양한 종류가 나타났으며, 만화, 소설, 비디오, CD, 영화, 광고,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청소년유해환경 또한 미증유의 양산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접근용이성과 양질면에서 이전 어떤 매체도 가지지 않았던 유해성과 비교할 때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유해매체물 접촉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디오테이프(70.5%), 만화책(67.7%), 소설·잡지책(48.9%), 게임(47.3%), 영화(43.5%), CD롬(39.2%) 순서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 접촉도 60%를 넘고 있다.(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1999)

▶ 유해업소

유해업소는 기성세대의 유흥문화에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청소년이 출입·고용되어서는 좋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종류만 해도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등 수십업종이 되며, 대표적인 청소년유해업종과 그 숫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무도장·학원	숙박업소
업소수	20,908	22,216	2,898	1,296	31,963

한편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작년 한해 4,047건이며, 실제 적발하지 못한 것이 더 많다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의 착취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유해약물

유해약물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장애를 초래함은 물론 각종 비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본격적인 비행으로 접어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라고 볼 때 청소년의 약물경험율은 청소년의 건전도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약물인 술과 담배에 대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각의 경험율은 다음과 같다. 먼저 흡연현황을 보면 초·중·고생의 흡연경험이 35.4%이나 되었고, 이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5%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호기심에서 1~2번 흡연한 비율을 제외하고 가끔 혹은 습관적으로 피우는 비율도 고등학생의 35%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현황을 보면 초·중·고생의 음주경험이 60.2%이나 되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3번이상 음주한 경험이 있는 비율만도 34.3%에 이르며, 또 가출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약 52%가 본드를 흡입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1999)

그리고 작년 한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12,416건이나 실제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 증가

소위 "영계문화"에 기인한 청소년 성착취범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다.

2000. 7. 1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사범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 수			처 리			수사중
	계	구속	불구속	기 소	소년보호 사건송치	수사중	
2000 (7~12월)	1,159	566	593	540	73	26	396
2001 (1~6월)	1,656	680	976	793	255	19	485
계	2,815	1,246	1,569	1,333	328	45	881
							340

* 자료 : 대검찰청

2. 청소년보호법 입법개요

가. 입법취지 및 추진경과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접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외부적인 재재가 없다면 청소년유해환경의 증가 및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 현상은 계속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음란·폭력성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고용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장치로써 청소년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는 물론 정부, 언론·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주체들의 총체적인 참여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유해환경을 척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에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96. 4월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국내외 관련법률 조사 분석, 연구, 각계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96. 9), 새 정치국민회의 정동채의원 등 34명이 공동발의하여(96.11), 입법이 되어(97. 3), 시행되고 있다.(99. 7) 동입법과정에서는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단체, 개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특히 의견수렴과정에서는 규제대상 확대, 불이익 환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일부조정 등 청소년보호법의 핵심적인 사항이 많이 반영되었고,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원입법형태로 제정되어 국민적 지지하에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연혁

동법은 97. 7월 처음 시행된 관계로 시행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게 2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주요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97. 3월 청소년보호법 제정
- 1997. 7월 청소년보호법 시행
- 1997. 7월 청소년보호위원회 발족

○ 1999. 7월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

○ 2001. 8월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

다.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요청에 의해 지난 97년 제정된 법으로써 우리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장애가 되는 유해환경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영상물, 정보통신물 등),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업소(성인전용업소), 유해행위(학대, 폭력, 착취, 성적유린 등)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그리고 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등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오로지 영리와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악덕 상업주의를 규제하는 법으로, 청소년을 처벌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청소년보호법은 매체물을 검열하는 법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이다.

청소년보호법은 매체물 심의와 관련하여 완전 "사후심의제"로 제작·수입단계에서의 모든 사전심사를 폐지하였고, 성인매체물에 대한 『제작이나 생산과정』에는 일체 간여하지 않고 소관 심의기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공식적인 고시가 있은 이후에 비로소 『유통과정』만을 규제하는 법이다. 이는 종전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매체물에 대한 자의적인 규제가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를 조화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 정의

- 다음의 매체물 중 주로 성인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심의기준에 따라 해당심의 기관이 청소년에게는 유해하다라고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
 -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의 범위
-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 연극, 음악, 무용
 -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문자정보
 - 방송법상의 방송프로그램 (보도프로그램 제외)
 - 정기간행물 (정치, 경제, 산업, 과학분야 제외), 일반도서, 전자출판물
 - 광고물
- * 동 매체물이 모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고, 심의를 받은 후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인정되어 고시가 된 후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갖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된다

○ 규제내용

- 표시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 (법 제14조)
- 포장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간행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비닐용지 등으로 포장하여야 함 (법 제15조)
- 판매등 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7조)
- 구분·격리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지 아니하고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8조)
- 자동기계장치 등 전시·진열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8조)
- 방송시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할 수 없음 (법 제19조)

나. 청소년유해업소

○ 정의

-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 법으로 구체적 업소를 정하고 있다.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유홍주점”, “단란주점”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연소자실을 갖춘 업소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 “무도장”
 -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장”
 - 전화방 및 기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업소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과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집·카페등의 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하거나 또는 개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대여업”, 게임제공업 중 “종합게임장”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판매 및 취급업”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및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업소

○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24조)
-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

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법 제24조)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함(법 제24조)

다. 청소년유해약물 등

○ 정의

-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등 청소년유해약물
- 성기구 완구류중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물건

○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규제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에 의한 경우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6조)
- 표시의무 : 청소년유해약물등에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라. 청소년유해행위

○ 정의

- 신체적·정신적으로 청소년을 학대·유린하는 행위 일체

○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규제내용 (법 제26조의2)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시 1년이상10년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혹을 돌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시 10년이하의 징역
- 영리 또는 홍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10년이하의 징역
- 영리 또는 홍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

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는 안됨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 청소년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2000. 7.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이전)

4. 청소년보호법의 심층 이해를 위한 논고

가. 보호대상 연령의 산정문제

보호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후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단계만으로 정의되는 시기가 아니라 개인의 소양과 성장환경, 현재의 생활환경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라는 일부의 불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규범은 주관적인 요소보다는 객관적인 요소를 근거로 규율될 때 법집행의 명료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청소년보호법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에서 법적용의 대상을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례이다.

문제는 몇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정 당시에는 보호대상 청소년연령을 만18세미만으로 규정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전의 청소년보호 문제를 담당하였던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보호 연령인 만20세미만보다 지나치게 낮게 규정하였고, 특히 만18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차원의 청소년보호연령을 통일하기로 하고 만19세미만으로 관계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만19세미만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보호대상 청소년은 고교3년생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교3년생의 95.95%가 18세 이하임에 기인한 것이었다.

* 우리나라 고교3년생 연령별 분포현황 (98.10.1기준, 교육부)

구 분	인 원 (명)	비 율 (%)
17세이하	382,778	50
18세	351,853	45.95
19세이상	31,018	4.05
계	765,649	100

한편, 서양식 만나이 개념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므로써 동일년도의 출생자는 동일나이로 동년배로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생활의 관행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이런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여 만19세의 연령산정의 방법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 개념에서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나이 개념으로 개정하여 2001.8.25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19세미만' 연령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청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만18세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상 그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갖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19세미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99헌마 555, 2001. 1.18)

나. 청소년 인권의 보호문제

청소년보호법은 왜곡된 기성세대와 극단적 상업주의로부터 청소년의 발달, 생존, 보호의 기본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과 성년을 구별짓고 청

소년을 미성숙한 주체로 단정하여 그들의 행동과 사고를 제한함으로써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와 본질을 다소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보호능력이 약한 자에게는 자기의 권리를 지켜 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무조건 모든 것을 일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임적 태도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그리고 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등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오로지 영리와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악덕 상업주의를 규제하는 법으로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향후 성인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추는데 장애가 되는 비인권적 요소를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한다.

다. 청소년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문제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양대이익을 조화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종전 형법이나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성표현물의 경우 일반물과 음란물로 이분화되어 소위 웬만큼 야하다고 생각되는 성표현물에 대해서는 단속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음란물로 규정, 판매자뿐 아니라 제작자, 소지자 모두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성표현물에 대해 성인물 개념의 "청소년유해매체물"개념을 도입, 제작이나 창작환경에 진일보한 완충지대를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불법표현물인 음란물(illegal contents)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유통뿐 아니라 제작이나 소지까지 금지하고 있지만(형법과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유해물(legal but harmful contents)은 음란물까지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보아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성표현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대상으로서 제작행위에 대해서는 간접할 수 없고, 다만 유통과정에서 청소년유해성을 감안하여 성인에 한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인물의 개념은 청소년보호법의 등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즉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은 처벌대상을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문서, 도화, 음반 또는 비디오 물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중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들을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음란물이 아닌 성인물 수준이라 하더라도 제작자체를 봉쇄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청소년보호법은 제작·수입단계에서 모든 사전심사를 철폐하고 완전 사후심의제로 전환, 창작·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나 대여 배포 등을 제한하고 일정한 표시나 구분격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의무도 만화가나 영화감독 같은 실제 제작자가 아니라 출판사나 영화사 또는 유통단계에서의 판매업자 등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이 합리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많이 주었던 미성년자보호법은 폐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전 미성년자보호법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만화 “천국의 신화”와 관련 작가 이현세씨가 기소된 사건은 당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것으로 만약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었다면 작가가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위헌제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동제도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합헌적 제도로 결정한 바 있다.(99헌가16, 2000. 6.29)

라. 심의기준의 구체성 문제

심의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조문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중의 하나이며, 심의는 시대상황과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존하는 주관적 개념이 강한 만큼 이를 객관적·기술적으로 법조문화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체성의 문제, 해석상의 문제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기준과 관련한 입법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개괄적으로 규정, 구체적 해석은 대부분 학설과 판례에 맡기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비해 청소년보호

법은 심의기준과 관련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한 최초의 입법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심의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도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와 관련해서는 심의기준 자체의 구체성등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심의과정에서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비추어 동 기준의 취지에 맞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5. 맷는말

이상 청소년보호법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주요논점 등을 서술해 보았다. 법률은 그 취지와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취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예기치 못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법률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행과정에서의 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청소년보호법도 당시의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이 보다 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미래사회를 건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관심과 애정 하에 미비한 부분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과 표현의 자유

이동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청소년보호법’과 표현의 자유

이 동 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1. 표현의 자유와 문화검열의 이행

1997년 미성년자보호법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억압하려는 국가장치들은 새로운 단계를 맞게 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이 탄생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방식이 도입되었고, 이는 80년대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의 표현물들을 억압하는 방식이 지배적이었던 환경이 90년대 들어서는 성표현물, 음란물을 규제하는 방식이 더 강화되었음을 지시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들어 개인의 문화적 자유에 대한 이해와 옹호가 커지면서 이념적인 표현물들은 쇠퇴하고 상대적으로 성표현에 대한 진보적인 창작행위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문학, 영화, 대중음악, 만화, 비디오, 게임 등에서 성표현 및 선정적 표현에 대한 표현 수위와 방식들이 대단히 자유로워졌고, 그 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반사회적, 비윤리적 주제들에 대한 과감한 묘사와 기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표현에서의 자유는 한편에서는 기성세대의 보편적 가치에 도전하는 면들을 담고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접근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청소년 일탈과 비행 사건이 터질 때, 그 사건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 문화적 표현물들이 지목되고, 기성사회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선정적이고 음란한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시켰다. 청소년보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상당수의 창작물들이 과도한 검열을 당하는 결과를 냉았다. 청소년보호법의 등장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맷는 연관성을 논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보호법은 국가의 검열방식이 정치적, 이념적 방식에서 윤리적, 도덕적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소년보호법은 “문자 그대로라면 청소년들을 소위 ‘유해환경들’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윤리적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 행사의 새로운 장소가 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¹⁾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정치이념적인 표현에서 욕망의 표현으로 이행하는 것에 맞춰 국가권력의 작용점도 정치적, 이념적 겸열에서 감성적, 감각적인 겸열로 이행한다. 물론 이러한 겸열은 압수, 파본이라는 폭력적인 방식 대신에 등급보류, 청소년유해매체고시라는 유연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연화 전략이 창작자들에게는 내면적인 자기겸열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명분으로 ‘청소년보호’라는 새로운 장치가 등장했다. 기존의 미성년자보호법은 청소년보호라는 일관된 원칙없이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²⁾청소년의 일탈과 비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는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설득력있는 논리일 수 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국가의 겸열장치는 문화적 표현물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명분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결과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순수한 명분과는 무관하게 문화적 표현물들, 성표현물들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해버린다. 청소년보호론이 문화적 표현물을 유해매체로 고시하는 과정에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사회적 맥락이 거세되며, 이는 결국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문제들로부터 사회적 장치들이 한발 물러서 있겠다는 알리바이, 혹은 무서운 십대들을 향한 부모세대의 반항(?)내지는 화풀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³⁾

1) 고길섶, 「문화의 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진보평론』 1999, 겨울호 참고

2) 1961년에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은 청소년보호법에 비해서는 대단히 불완전한 법이었다. 미성년자의 출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도육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도서/음반류/기타물건을 미성년자에게 반포 판매 중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의 금지(제2조).

3) 가령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자. “한국 사회는 청소년 문제, 더 나아가 청소년 범죄에 관해서 구조적 공범자들로 가득차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이런 범죄에 대한 알리바이로서 기능한다. 또 청소년보호법은 영화, 비디오,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십대가 즐기는 것들을 옥석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겸열, 즉 문화적으로 고문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 딱지를 붙이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유해매체로 낙인찍힌 것들을 십대로 하여금 보게 하거나 즐기게 하는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일종의 좌경 세력으로 분류된다. 과거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 그러했듯이 청소년보호법은 단지 처벌과 규제와 단속으로써 문제를 어기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의 탄생은 기존의 개별 심의기관들을 하나로 조장 통합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지 않고, 영상물의 등급이나 청소년 불가 판정에 대한 심의들은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등장으로 기존의 심의 기관을 하나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겨난 것이며, 이는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적 표현물 전체에 대한 겸열을 일관되게 수행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개별심의기관들의 심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보호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것뿐 아니라 문화적 표현물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된 셈이다.

이 글은 <청소년보호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검토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거나 심하게 규제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지적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청소년보호법만큼 구체적으로 지적 할 사안들이 많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겠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2. 문화전쟁으로서의 청소년보호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탄생은 문화적 표현물, 특히 성표현물에 대한 문화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출범식이었다. 70년대 초반 미국의 개신교 보수교계에서 주도한 성표현물에 대한 대대적인 퇴치운동이 이른바 ‘문화전쟁’이란 이름을 얻게되면서, 문화예술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사이에 치열한 문화논쟁을 낳았듯이 한국에서 불고 있는 ‘신문화전쟁’ 역시 보수적 종교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만 미국의 전례에 비해 특이한 것은 문화전쟁에서 국가장치가 종교적 문화보수주의자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국가장치들이 주로 문화적 표현물에 대해 정치적 겸열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가부장제, 종교적 교화주의

지로 생산해내고, 동시에 생산된 문제를 사회적으로 소비하려고 한다.”(이재현, 「너희가 십대를 아느냐? 청소년문화와 청소년정책에 대하여」, 문화연대주최심포지움, <청소년과 청소년보호법을 말한다> 발제문, 1999.11)

를 파트너로 삼아 문화적, 정서적 검열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PC통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윤리의 기본 강령 제정,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라 하지만, 염연히 국가예산을 쓰고 있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 위원회의 임면권자이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인 바 문화전쟁에 대한 국가장치들의 개입은 보수적 종교계의 역개입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특정한 ‘인구통제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보인다. 소위 과거 보다 유연화된 국가의 문화 검열 장치들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과 윤리적 공포심에 시달리는 시민적 가설에 부응해 좀 더 전면적이고 미시적인 검열을 자연스럽게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가개입형 문화전쟁이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심하게 남용하여 대단히 천박한 수준으로 ‘유해성’ ‘음란성’의 기준들을 도식화하고 있다는 점이며, 문화적 토론과 맥락을 배제한 채 일종의 가설(청소년보호라는 가설)에 근거한 법의 재생산과 법적 도그마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의 문화전쟁은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싸움과 법적·제도적 싸움의장을 이중적으로 형성한다. 작년 초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에서부터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장정일의 『네게 거짓말을 해봐』, 김인규 교사의 나체사진, 박진영의 『게임』 그리고 수많은 동성애자 사이트와 탈학교 아이들의 홈페이지 폐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을 보게되면, 그 안에는 항상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이란 제도적 장치에 의거한 ‘법적 처벌’이 협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청소년보호법의 구성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역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관철을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지속되는 문화검열 사건에서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 국가장치들이 벌이는 문화전쟁의 전략 지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성숙한 청소년’이란 담론이며, 그에 근거해서 문화적 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하는 행위이다. 이들은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에서 박진영의 『게임』에 이르는 성표현물에 대해 모

두 ‘청소년유해성’이란 혐의를 걸고 있으며, 그것의 정당한 명분으로 ‘청소년보호’라는 사회의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다. 이제 ‘청소년’은 문화적 검열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유해’와 ‘청소년보호’는 우리 사회의 성 담론, 성표현물의 새로운 이행을 억제하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한다.

그러나 사실 어떤 표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단을 누가 하는가? 곤혹스럽게도 청소년유해성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청소년 스스로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제 3자가 아니라 바로 문화전쟁을 선포한 당사자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유해성과 청소년보호론은 성표현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기성세대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이 이데올로기는 청소년의 삶뿐 아니라, “성인의 삶” 역시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한다는 윤리관을 반영한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유해성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데올로기의 근거 하에 과장되게 부풀려지고, 급기야는 “김인규 교사의 나체사진과 박진영의 앨범이 (일부) 청소년에게 유해할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한 가설이 “김인규 교사의 나체사진과 박진영의 앨범은 (보편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객관적 사실로 뒤바뀌어 버린다.

아시겠지만,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이 현행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 국가의 정보통신검열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상위법상, 혹은 모법상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이상, 청소년보호를 전면 방패막으로 내세우는 ‘문화전쟁’은 이제 국가의 청소년 정책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청소년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은 문화전쟁의 중요한 병참기지인 셈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문화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같은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이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꾸로 그러한 국가장치들이 청소년정책, 정보통신정책에 보수적 종교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그래서 현행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함축적으로 정의하는 정책이거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청소년을 외연적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을 대상에서 지원버리는 모순적인 정책으로 표류하고 있다. 적어도 보호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현행 청소년정책은 문화전쟁의 구성적 요소이자, 문화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진보성

을 규제·조절하려는 척도로 외삽 되어 있다.

3. 청소년보호법의 내적논리 : '청소년유해'와 '음란물'의 잘못된 만남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이나 박진영의 <게임>, 김인규 교사 부부의 나체사진에 대한 청소년보호론자의 생각들은 대체로 이들의 성표현이 음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이다. 물론 음란한 수위와 청소년의 연령을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작품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청소년보호법상의 19세 미만에는 10세도 있고 13세도 있고 15세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 없는 표현물들이 우리의 특수한 환경에서는 유해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청소년보호론자들이 바라보는 음란함의 기준에는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제작하는 당사자에 대한 도덕적 불쾌감이 들어가 있다. 말하자면 음란하다는 판단에는 도덕적, 윤리적 패륜행위라는 편견이 강하게 배어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론자들의 청소년유해성은 대중들에게 두 가지 공포심을 낳게 만든다. 첫째는 성인들이 성인물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성인물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리 쉽게 절제될 수 없는 것이지만, 여전히 성인물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은 스스로 비밀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성인물에 대한 탐닉과 선호가 그 접근을 당연시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탐닉이 큰 만큼 접근은 항상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더군다나 최근 인터넷 음란사이트들은 청소년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그들의 정서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지면서, 성인들 사이에서의 성인물 접근 역시 상대적 모멸감과 비난의 시선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말하자면 성인물의 시장이 확대되고 성인물을 보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성인물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가치평가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성인물은 범람은 그래서 사회적 용인과는 무관하게, '음란하고 혐오스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란 일종의 병리현상으로 해석되곤 한다.

두 번째 딜레마는 바로 성인물을 음란물로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박진영의 <게임>, 김인규 교사의 나체사진까지 근 2여년 동안 창작물에 대한 음란성 시비가 줄곧 문화계의 논란거리로 제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성표현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음란물', '음란성', '음란함'이란 단어들을 즐겨 사용하곤 했다. 보수적인 종교관에 근거를 둔 청소년보호론자들은 이들 작품들이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대단히 음란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비윤리적인 행동의 결과로 간주한다. 말하자면 성인물=음란물, 음란물=청소년유해물, 청소년유해물=비윤리적 행동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결국 성인물=비윤리적인 행동이란 비난을 당연시한다. 이 과정에서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나, 박진영의 <게임>, 김인규 교사의 나체사진은 청소년들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인에게도 정서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유해한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이 정당화된다.

4. '청소년보호법'과 표현의 자유

청소년보호법은 애초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이름으로 제정될 예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름이 지시하는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검열의 부담을 피하고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폭넓은 청소년보호정책을 사용하고자 청소년보호법으로 만들어졌다. 1997년 7월 1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재정 취지를 갖고 있다. "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어 1997년 7월 5일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되고, 1997년 11월 12일에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1999년 7월 1일 보호법이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보호법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을 음란, 폭력적 영상물, 인쇄물 등 유해매체물과 약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법이 제정되어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 법집행 상 실효성이 확보가 필요하거나 해석상 논란

의 소지가 있는 부문 및 규정 미비로 청소년보호 사각지대가 되어온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청소년보호법은 90년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청소년일탈과 비행에 대해 국가가 적절하게 규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대부분의 법조항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 업무가 청소년 유해매체를 고시하는 데 있어, 사실상 유해매체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으로 기능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의 불평등한 사회활동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다는 급진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폭력적 표현물 등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 하에서 청소년보호법은 결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구조화하고 있는데,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보호법은 정작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인권과, 문화와 교육과 복지 등등의 대상과 영역을 보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일정한 경계를 두으므로써,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내세우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몇 가지 기준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표면적인 원칙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청소년 규제의 원칙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화적 생산과 수용의 수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요컨대 청소년유해매체로 낙인찍히는 작품들은 소위 ‘음란물’, ‘저질상품’으로 규정되면서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인에게도 유해한 것으로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성표현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수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유해매체”, “음란매체”라는 명시적인 규정에서부터 읽을 수 있다. 예컨대 보호법의 규제원칙과 심의기준을 옹호하는 청보위나 여타의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삼았던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 이현세씨의 『천국의신화』, 김진표씨의 『추락』, 조피디의 『조PD in Stardom』 등등의 문화적 표현물들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이자, 성표현물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거세시키고, 그것의 사회적 도전을 좌시 하지 않겠다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윤리관이 개입되어 있다.

2)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은 준사법적인 기능을 가지고⁴⁾ 청소년유해매체 전체를 조정, 총괄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의 사실상 2차 검열에 해당되는 심의권한의 조항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 볼 수 있다.⁵⁾

3)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는 사실상 “청소년행동규제/통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의 원활한 부서별 연계와 실제적인 효과를 위해 개정되었다던 보호법은 사실상 ‘청소년보호’ 차원을 넘어서 청소년에 대한 법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통제 창구로서 기능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폭력, 약물, 매매 춘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계도적인 여과 장치가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 강제력과 신체적, 감성적 자유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 물론 보호법의 처벌 대상은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나 물건이나 장소를 제공한 성인에 있지만, 정서적, 감성적 ‘감시와 처벌’로서의 청소년을 규제하는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며, 최근에는 청소년들도 처벌되거나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보호”가 광범위한 청소년 통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유해매체, 유해물건, 장소로 규정하는 심의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기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시행령 제32조(<제3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은 임기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에 근거해서 독립적인 신분을 보장받으며, 제35조에 의해서 검사 및 조사권한을 부여받고 있다(<제35조: 검사 및 조사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5) 청소년보호법 8조 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 심의기준들은 대부분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심의하는 주체에 따라 겸열의 폭이 훨씬 광범위해질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1)항 자체는 청소년은 성적욕구를 자극 받지 않는 주체로 단정해버리면서, 청소년에게 있어 성표현물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의도하고 있고, 4)항의 경우는 청소년유해매체의 범위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매체로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청소년들의 사회비판의식에 대한 기회를 억제하고 있다.

4) 청소년보호법은 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에 대한 기성세대를 위한 법으로 기능한다. 보호법은 예컨대 '모성보호법'이 모성보호에 필요한 여성의 각종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기능하는 것과는 다르게 법적 대상인 청소년들 스스로의 권리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모성보호법'이 보호 대상을 내면화한다면, 청소년보호법은 외면화한다. 말하자면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결코 그들의 권리 전반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숙과 사회적 제반 권리에 대한 보수적인 기성세대 다수의 윤리적 공포감과 문화적 불쾌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부모세대나 기성세대를 훈육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의 근거하에서 부모들이 교육시키라는 사회적 명령,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규정된 내용에 대해 기성세대 스스로 자기검열하라는 무의식적인 요구 등등이 보호법의 이데올로기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나 장소나 물건에 대한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판단이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만듦으로써, 청소년유해성이 성인유해성으로 이행하게 된다. 요컨대 보호법의 유해매체 심의기준 시행령을 보면 이 기준들이 결국은 기성세대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과 윤리관의 보존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의 심의기준'의 개별심의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마.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해손할 우려가 있는 것.
- 바.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사.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해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 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시행령 개별심의기준은 청보법 본문에 나오는 심의기준에 비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것 역시 대단히 모호하게 판단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특히, 나)항 성행위의 지나친 묘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항에서는 동성애를 수간이나 혼음과 같은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성애 자체를 청소년에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려 하며, 자)항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에 대해 청소년들의 접근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5)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를 통제하는 방식에 있어 대단히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청소년유해매체 차단 방식은 크게 제14조 <유해매체 표시방법>(제14조)⁶⁾,

제1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⁷⁾, 제16조 <청소년연령확인>⁸⁾, 제16조의2 <판

6)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 제6호의 규정에 해

매금지>⁹⁾, 제17조 <구분·격리방법>¹⁰⁾, 제18조 <청소년시정보호시간대>¹¹⁾, 제19조의2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¹²⁾, 제19조의3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¹³⁾, 제20조 <청소년연령확인>¹⁴⁾으로 구분되어 있다.

당하는 것(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제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걸표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제호를 제외한 걸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8)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9)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등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법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10)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야 할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4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판매 등이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 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한다.

11)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정보호시간대"라 한다)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정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편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1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4의2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 함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라 함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의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4)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발효로 이러한 의무조항을 지키는 과정에서 영화, 음반, 출판, 만화, 텔레비전, 게임물, 비디오물, 비디오방, 노래방 등등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당장 텔레비전에는 청소년연령시청가능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음반의 경우 18세판매불가딱지(소위 ⑯딱지)를 달아야 하며, 만화의 경우는 만화책 표지에 인쇄단계 때부터 18세 구독불가라는 딱지를 붙이고, 비닐포장을 의무화해야 한다.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게임방에 청소년들은 10시 이후에는 출입이 금지되고, 청소년들이 출입과 고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장소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바야흐로 청소년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격리, 구분, 훈육정책이 본격화 된 것이다.

5. 청소년보호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거두절미하고 97년 청소년보호법이 생겨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들을 연대기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불량만화 5백만권 판금

일본 음란, 폭력 만화의 불법 복제물 등 불량 만화 1천 7백종, 총 5백 10만권에 대해 일괄 청소년 유해판정이 내려졌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5일 오전 전체위원회를 소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만화를 뿌리뽑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 서점과 문방구, 도서대여점 등 어느 곳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일절 판매 및 대여, 배포를 금지도록 했다. 보호위의 조치에 따라 불량만화 목록(블랙리스트)은 경찰 등 단속 기관에 통보되며 이를 위반, 청소년에게 대여, 판매,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출판사나 제작자가 유해표시나 포장하지 않을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97년 7월).

2) KBS, MBC 복장불량 등 규제

MBC는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 28일부터 출연 연예인의 복장과 행동을 규제한다.

이는 KBS가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맞춰 12일부터 연예인의 복장을 규제한 데 뒤이은 것. 앞으로 MBC에 출연하는 연예인은 ▶지나치게 찢어진 청바지 ▶빨강, 초록 등 과도한 머리 염색 ▶코걸이 차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남자 연예인은 윗몸이드러나는 투명한 옷 등을 입을 수 없으며 여자연예인의 경우 속옷을 입지 않은 선정적 차림을 할 수 없다(97년 7월)

3) 재야단체 간행물의 '청소년보호법' 적용 : 서청협 '서울청년' 배포 제한
진보적 주장을 담은 재야단체의 회원지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배포를 제한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는 8월 19일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서청협·의장 전상봉)의 계간 회원지 〈서울청년〉 8호를 심의한 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를 서청협에 통고했다. 위원회는 이 계간지에 실린 '7·4남북 공동성명의 의의와 통일운동의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 담긴 미군철수 주장과 '민족 민주진영의 주도로 통일 지향의 정권을 수립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선자금 공개와 김영삼 정부의 퇴진을 주장한 대목이 특히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지적했다(97년 9월).

4) 청소년 불심검문 몸수색

경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단속을 하면서 유흥업소 근처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불심검문을 벌였다. 청소년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 1일 위반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는 경찰청지시가 내려진 뒤 일상적으로 벌이는 불심검문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청소년뿐 아니라 학교나 공원 주변에서 중·고교생이 모여 있을 경우 검문과 몸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998년 12월 10일부터 1999년 2월 6일까지 두 달 동안 청소년보호법의 위반사범 및 '비행청소년' 40,610명을 적발했다. 위반사범은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유해약물 취급자, 유해매체물 취급자로서 8,985명으로 이들을 구속, 불구속입건, 즉심으로 처리했다. 31,635명의 '비행청소년'은 254명이 즉심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보호자 등에 인계했다. 적발된 '비행청소년'들은 음주/흡연, 싸움 등 소란행위, 남녀혼숙, 불량만화/포르노잡지 소지 등의 행위를 했다(97년 10월 9일).

5) 조PD 음반 '청소년 유해 판정' 판매금지 결정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음반 '조PD 인 스타덤'의 가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청소년 유해여부 결정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위원장 대행 김상식)에 의뢰했다고 15일 밝힌 데 이어 공진협이 16일 바로 이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공진협은 힙합가수 조PD(22·조중훈)의 데뷔앨범 『조PD 인 스타덤』 수록곡 중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의 가사에 남성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가 7군데 등장하는 등 유해성이 명백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청소년보호위가 음반의 유해 매체물 심의를 요청한 것은 그해 10월 24일 유승준의 음반 『웨스트 사이드』에 이어 두 번째이다(99년 3월 17일).

6) 가수 김진표의 <추락> 청소년유해매체 고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7일 근친상간을 묘사한 내용의 가사를 담은 가수 김진표의 노래 '추락'에 대해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청소년 유해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공진협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99년 5월 17일).

7) 『제르마늄의 밤』 청소년유해매체 고시

한·일간 문학 작품을 놓고 외설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작은 지난해 아쿠타가오상을 수상한 일본 소설가 하나무라 만게츠(44)의 『제르마늄의 밤』(C&C 미디어). 지난달 11일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노골적인 성묘사와 동성애, 청소년의 성접촉 등 10여군데가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된다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작품은 이번 달부터 비닐랩이 씌워진 채 '18세 미만 구독불가' 스티커가 붙여져 서점에 진열됐다(99년 6월 22일).

8) 연극 <로리타> 사법처리 방침

여고생의 알몸연기로 화제를 모았던 연극 <로리타>가 당초 예정보다 일찍 막을 내린 가운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연출자 등 연극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혀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청소년보호위는 29일 "연극 <로리타>에서 여고 2년생인 임모(17)양이 알몸으로 2분여간 성행위를 연기한 장면과 관련, 19세 미

만의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연극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보호위는 공연에서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상의 근거를 들어 임양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9년 11월 29일).

9) 영화 <거짓말> 상영 논란

두 차례 등급보류 끝에 심의를 통과한 영화 <거짓말>의 개봉(8일)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영화 제작자와 극장주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상영 저지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영화사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영하는데도 시민단체가 이를 가로막는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 시민협의회(공동대표 손봉호·孫鳳鎬 서울대교수)는 6일 이 영화의 제작자인 ‘신씨네’ 대표 신철씨와 장선우 감독, 단성사 등 전국 100여 개봉관 극장주들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강지원(姜智遠) 위원장도 “청소년보호법 8조 4항에 매체물 내용이 형법에 저촉돼 전면금지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의무적으로 형사고발 해야 하는 만큼 청소년이 이 영화를 관람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 관계자들에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00년 1월 7일).

10) <춘향뎐> 청소년보호법 위배 논란

이번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이 영화에서 미성년자인, 춘향역의 여배우의 가슴이 노출되는 등의 장면이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청소년보호법 26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부터다. 이 조항이 문제삼는 것은 영화의 촬영과 상영이 미성년자 배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 했느냐이다(2000년 2월 4일).

11) DJ DOC 5집 『더 라이프…디오시 블루스』 청소년유해매체 고시

“(우리를) 생 양아치로 매도시킨 너희 사이비 기자들 잘 들어봐／…／엉터리 기사에 내 가슴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지／그 똑똑한, 그 잘난 머리와 펜 잘 돌려봐”
“오라 가라 가사 바꿔라 아래라 저래라 지랄하지 마라／도대체 누가 누굴 검열하나／아직도 니네 일제시대인 줄 아시나／사전심의제도 없어졌어도 여전히 분명히

존재하는 검열제도／이름만 바뀐 청소년보호법 말하자면 검열보호법”

“문제야 문제, 우리나라 경제, X 같은 짭새와 꼳대가 문제／야 니네 이제 총까지 쏴, 영화 졸라 많이 봤나봐／근데 사람 봐가며 쏴야지 아무나 쏘면 되나 인간사냥을 하시나”

DJ DOC의 5집 앨범은 위 가사의 선정성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되었다(2000년 5월 31일).

일단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청소년보호법의 침해 방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특정한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특정한 표현행위가 갖는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로 즉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점 둘째, 문화적 표현물 중 특정부위가 노출되는 성적표현과 사회적 금기를 표현하는 표현물은 모두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한다는 점 셋째, 성표현물만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성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허구적 표현물과 실재현실 사이의 구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 다섯째, 청소년유해매체를 심의하는 주체가 문화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며, 고시하는 방식도 폭력적이고 잡단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6. 결론 : 청소년보호법과 음비계법의 개정방향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청소년관련 매춘과 매매춘, 원조교제 등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법의 폐지 자체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보호법폐지운동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사회적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역공세를 펼치기도 한다. ‘청소년보호법’ 유지론이 부모, 교사, 여성단체, 종교단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호법 폐지는 단순히 문화예술단체들만의 항변이 아니라 진보적인 학부모, 교사, 청소년단체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청소년들 스스로 보호법에 대한 저항운동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청소년들의 인신매매나 매매춘을 근절시키고, 가정에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명분이다. 그러한 보호운동과 법적 제도적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도 일선 경찰에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문제이며, 현행 형법이나 인신매매에 관한 법령 등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심의 역시 청보위가 없더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라는 특수한 상황이나, 명분에서 탄생된 일종의 '옥상옥'의 법이자 기구로서 폐지되거나 해체되어도 정말로 보호되어야 할 것들은 기존의 법이나 제도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

제정 취지로 보자면 그리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는 청소년보호법은 그러나 태생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음란매체를 규제하려는 명분으로 사용되는 법인만큼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냈다. 그 동안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유해매체로 분류된 작품에는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크게 해가 될 수 없는 작품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알게 모르게 청소년보호의 층위와는 무관한 성적 표현의 자유 자체에 대한 검열과 규제장치로 사용되곤 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의 유해매체 심의 기준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문화적 현재 맥락에 역행하는 것들이 많아 자의적인 판단이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며, 이는 청소년들의 성적,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유예하는 결과를 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있음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기검열과 과도한 심의기준이 관철되고 있고, 문화관련 각종 법들의 시행 기준과의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이것이 문화정책 상의 혼선을 빚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대중의 집단적 망각심리가 이 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어렵게 만들며, 역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신장을 억제하는 기능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문화적 표현물을 수용하는 사회적 도량이 넓어지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들이 옹호될 수 있으려면, 청소년보호법은 이제 사라져야하지 않을까?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슬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막고 창작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받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과 음비개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2조 1항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을 규정하는 19세는 종전 18세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스웨덴 15세, 미국 17세 유엔 아동권리 조약 18세미만 등)와는 거리가 멀다.

2) 8조 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상 해당 심의기관의 판정을 뒤엎을 수 있는 2차 검열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3) 10조 1항의 유해매체 심의기준은 청소년의 감성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규제하는 항들로 정해져 있고, 특히 4번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항목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많고(실제로 진보적인 단체의 기관지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된 것이 있다), 6) 11조 심의내용의 조정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문화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이 없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4) 33조 3의 2항, "제1항의 규정("위원장은 사무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 "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게 지나치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다.

5) 35조 1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허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역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나친 사법권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검문과 검색을 할 여지를 넣고 있다.

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유해매체물에 대한 개별심의 기준 중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 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등의 조항들은 모호한 기준이거나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조항이거나, 문화적 표현물의 상징성을 왜곡해서 혐의를 걸을 수 있고 결국 청소년을 미성숙한 보호 주체로 일별해서 판단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다항의 동성애 부분과 자항 전체는 삭제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와 물건과 장소를 규제하는 법으로 기존의 관련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보호법이 말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는 규제와 통제중심의 청소년정책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창작자와 수용자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그것의 소통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청소년보호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학교와 가정과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인권과 교육권과 문화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권이 실제적으로 보장받고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음비계법은 폐지 및 개정되어야 한다.

제21조 (종합게임장)

① 18세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중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게임제공업소(이하 “종합게임장”이라 한다)에 한하여 오락제공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게임장에 설치하는 18세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종합게임장 외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에 한하여 오락제공할 수 있다.

③ 종합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18조제2항제3호의 게임물과 그 외의 게임물을 분리·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종합게임장의 운영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관한 광고와 선전물이 배포·게시되는 경우에 연소자에 대한 유해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연소자에 대하여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한 광고나 선전물은 배포·게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여부의 확인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 집2

발행일 2001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 흥사단
발행인 유종열
엮은이 권혜진 청소년 인권 전문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8
전 화 02)743-1913 · 송 신 3672-6262
E-mail sunries@hanmail.net
